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16 Winter 2018





차례

연구논문

- 이원택 ▣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6
- 홍성근·서종진 ▣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30
- 김영훈·홍정은 ▣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58
- 박진희 ▣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 독도연구소의 『영토해양연구』를 중심으로 82

사료해제

- 이원택·정명수 ▣ 울진 대풍헌 소장 「완문」과 「수도절목」의 해제 및 번역 120

서평

홍성근 ■ 글루쉬코프 교수의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146

영토·해양 일지

도시환 ■ 영토·해양 일지 154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정 160

발행 및 심사 규칙 162

투고 요령 166

연구윤리규정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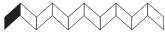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172

연구 계획서



- **이원택** |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 **홍성근 · 서종진** |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 **김영훈 · 홍정은** |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 **박진희** |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 독도연구소의 『영토해양연구』를 중심으로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1978년 장한상(張漢相, 1656~1724)의 울릉도 수토(搜討) 내용을 담고 있는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발견은 울릉도·독도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울릉도사적」은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에 관한 구체적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정부의 울릉도·독도 통치를 입증해 주는 사료다. 특히 울릉도에서 독도를 직접 목격하고, 목측(目測)을 통해 실측(實測)에 근사한 거리와 크기를 서술한 장면은 읽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울릉도사적」 및 장한상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울릉도사적」의 경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높은 평가(聲價)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구성, 성립 연대, 상호관계 등 문헌학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감이 없지 않다. 마침 근래에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비명(節度公兩世碑銘)』이 널리

* 논문 투고일: 2018. 10. 10. 심사 완료일: 2018. 11. 5. 게재 확정일: 2018. 11. 19.

알려지고,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실려 있는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 및 『교동수사공만제록(喬桐水使公輓祭錄)』이 공개됨과 동시에 순천 장씨(順天張氏) 가문의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 등의 자료가 알려지면서 연구의 활로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다음 몇 가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필사된 연도를 재검토하고, 연도 추정 단서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들 책자의 주요 내용이 순천 장씨 가문의 문적인 『승평문헌록』에 수록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셋째, 아주 최근에 공개된 『교동수사공만제록』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나머지 2종의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넷째, 「울릉도사적」은 이른바 『서계잡록(西溪雜錄)』의 「울릉도(蔚陵島)」와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와유록(臥遊錄)』의 「울릉도(蔚陵島)」를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양자의 관계를 추론해 보려고 한다.

다섯째, 『서계잡록』의 「울릉도」 중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에 나타난 우산도(獨島)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나타난 ‘멀리 동남쪽에 보이는 섬(獨島)’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와유록』의 「울릉도」에 나타난 우산도·울릉도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과 다름이 없다는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II.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와 필사 연도

「울릉도사적」은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1978년 울릉도에서 처음 발

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의 『독도연구(獨島研究)』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9월 20일 도달한 이후 10월 3일까지 장한상(張漢相)은 섬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었다. 그리고 이 심찰(審察) 결과를 부도(附圖)와 함께 정부(政府)에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報告) 등사본(謄寫本)이 현재 남아 있는데 표제(表題)가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저자는 이 문단의 각주에서 「울릉도사적」의 입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삼척첨사(三陟僉使) 장한상(張漢相)은 울릉도(蔚陵島)를 심찰(審察)한 후 그 결과를 부도(附圖)와 함께 정부(政府)에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서(報告書) 별단(別單)을 찾을 수 없던 중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蔚陵島·獨島學術調查團)이 울릉도(蔚陵島)에서 입수한 『절도공양세비명(節度公兩世碑銘)』이란 표제(表題)로 된 소책자(小冊子) 속에서 발견되었다.(후략)²

송병기 교수도 울릉도·독도 연구에 「울릉도사적」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있다.

울릉도 수도제도를 정리하는 데는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한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료는 삼척첨사 장한상이 울릉도를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 기록으로 그의 외후손 신광박(申光璞)이 정리한 것이다.³

1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75~176쪽.

2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앞의 책, 176쪽 각주.

3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21쪽 각주.

유미림 박사 역시 「울릉도사적」의 발견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만, 발견된 곳이 울릉도가 아니라 장한상 후손가이며, 1978년이 아니라 1977년이라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 울릉도 관련 기록은 관찬 지지(地誌)나 사서(史書)를 제외하면 개인 기록으로는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울릉도사적」도 알려진 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이 사료는 1977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 울릉도·독도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장한상 후손가에서 발굴되었다.⁴

필자는 「울릉도사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동 자료를 수집하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1977~1978년 무렵 장시규(1627~1708)·장한상(1656~1724) 부자의 사당인 경덕사(景德祠)에서 『절도공양세비명』을 가져다가 마이크로필름에 사진을 찍은 다음 되돌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울릉도사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독도자료: 동양편 2』가 검색된다. 이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관에서 열람이 가능한데, 여기에 『절도공양세비명』 전체가 복사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에서 ‘절도공양세비명’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마이크로필름 자료 『절도공양세비명』이 검색된다. 이 자료는 『절도공양세비명』 전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사료관에서 필름 리더기를 통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다.

필자는 「울릉도사적」의 필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북 의성의 경덕사에 소장되었던 『절도공양세비명』을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절도공

4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54쪽.

양세비명』을 관람했다. 이 책은 원래 경덕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의성조문국 박물관에 기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수장된 『절도공양세실록』에도 서체가 다른 「울릉도사적」 필사본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고 반가웠다.⁵ 박물관 측의 배려로 사진을 제공받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절도공양세비명』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를 살펴보자. 『절도공양세비명』의 끝에 필사자 신광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⁶ 서체로 보아 「울릉도사적」만이 아니라 『절도공양세비명』이라는 책 전체를 신광박이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울릉도사적」 사진만 보고 『절도공양세비명』이라는 책 전체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울릉도사적」에 바깥 붙여 필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박이 「울릉도사적」만 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사 연도와 이름을 쓴 줄이 앞줄에 바깥 붙여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울릉도사적」만을 필사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절도공양세비명』의 필사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첫째, 임인년, 둘째 외후예, 셋째 영양 신광박 등 세 가지이다.

우선 셋째부터 살펴보면, 영양(永陽) 신씨는 네이버 검색에도 나오지 않으며, 영양군문화원에 문의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신광박에 대하여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인명 검색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뒤늦게 영양(永陽)이 영양(英陽)이 아니고 영천(永川)의 옛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영천문화원에 문의해 보았으나 영천 신씨에 대해서 역시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본관이 영천이 아니고 거주지가 영천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인년인데, 1722년으로 비정한 유미립 박사의 견해를 따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722년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인년은 1662, 1722, 1782, 1842, 1902, 1962년 등에 해당된다. 유미립 박사는 아마도 1694년 수토가 있었고 그 해에 장한상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5 의성조문국박물관 특별기획전의 도록 『독도와 장한상』(2014)에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이 도판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나,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임인년 봄에 외후손 영양 신광박이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장 빠른 임인년인 1722년에 신광박이 필사했을 것으로 비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울릉도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절도공양세비명』을 보면 장한상에게 내린 경종 임금의 「사제문(賜祭文)」과 채헌징(蔡獻徵)이 쓴 「비명(碑銘)」이 함께 실려 있다. 즉 장한상이 죽은 다음에 필사된 것이다. 장한상은 1724년(경종 4)에 사망하였으므로, 신광박이 장한상의 「비명」을 1722년에 필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인년은 1782, 1842, 1902, 1962년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신광박이 외후예라고 했으므로, 장시규·장한상 가문의 사위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비명」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1977년 간행된 『순천장씨족보』에서도 신광박은 나오지 않는다.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III. 『절도공양세비명』과 『절도공양세실록』 그리고 『승평문헌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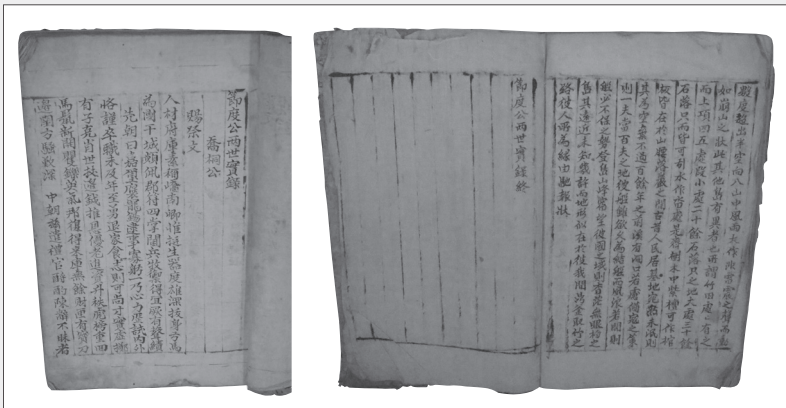
1. 『절도공양세비명』과 『절도공양세실록』의 비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보자.

〈표 1〉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의 편집 비교표

『절도공양세실록』	『절도공양세비명』	비고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兩代碑銘	
喬桐公 賜祭文	節度公 賜祭文	喬桐公—節度公 肅宗
輓詞		143首
碑銘		息山 李萬敷 撰, 外曾孫 成爾河 書
北兵使公 賜祭文	北兵使公 賜祭文	景宗
碑銘		護軍 蔡獻徵 撰, 崇禎後再周乙巳八月日立
蔚陵島事蹟	蔚陵島事蹟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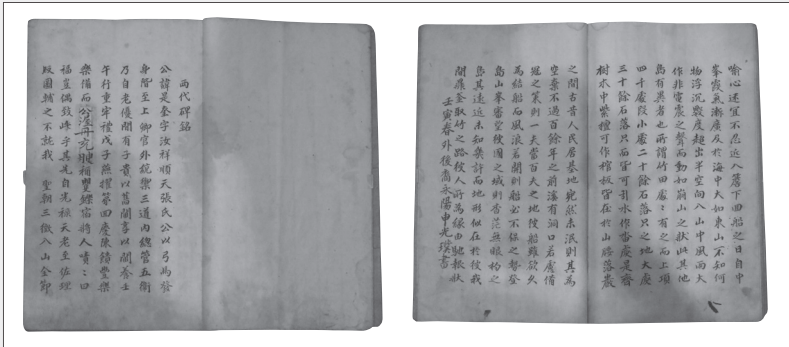
『절도공양세실록』은 별도의 목록 없이 교동공(喬桐公) 장시규와 북병사공(北兵使公) 장한상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교동공 파트에는 사제문, 만사, 비명이 실려 있고, 북병사공 파트에는 사제문, 비명, 「울릉도사적」이 실려 있다. 사제문은 국왕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각각 가장 앞부분에 실었는데, 전통시대의 일반적 형식으로 보인다. 교동공에 대한 만사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책의 편찬자와 필사자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본문 가장 앞에 ‘절도공양세실록’이라는 내용 제목이 있고, 책의 마지막에 ‘절도공양세실록중(節度公兩世實錄終)’이라는 기록이 있다. 전형적 양식에 따른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 『절도공양세실록』, 첫 면(왼쪽)과 마지막 면(의성조문국박물관 제공)

『절도공양세비명』은 장시규와 장한상의 비명을 가장 앞으로 끌어내 배치 하면서 별도의 내용 제목도 없이 ‘양대비명’의 소제목을 붙이고 바로 장시규와 장한상의 비명을 연속하여 실었다. 그리고 나서 교동공을 절도공이라고 바꾸어 소제목을 붙이고 사제문만 싣고 『절도공양세실록』에 있는 만사 전체를 싣지 않았다. 이어서 북병사공의 소제목 하에 사제문과 「울릉도사적」을 실었다. 책의 마지막에 ‘임인춘외후예영양신광박서(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고 하여 필사자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편집 방식을 택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왕조시대에는 임금이 하사한 사제문을 앞에 편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두 사람의 비명(碑銘)을 앞으로 끌어내는 특이한 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진 2) 『절도공양세비명』 첫 면(왼쪽)과 마지막 면(오른쪽) (의성조문국박물관 제공)

그런데 두 책에 공히 실린 「울릉도사적」을 비교하여 보면,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에 교정할 곳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에서 그 교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은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을 필사한 것이 틀림없다. 『절도공양세실록』의 편찬 연대는 장한상 사후라는 것만 추정할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절도공양세비명』은 아마도 가문의 문헌을 종합·정리하여 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임시로 필사한 것이거나, 필사자 신광박이 개인적으로 열람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공양세비명』이라는 표제도 내용을 포괄하지 못해 어색하다. 후대에 누군가 임의로 제목을 붙인 것일 수도 있다.

2. 『절도공양세실록』과 『승평문헌록』의 비교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표제는 『문헌록(文獻錄)』으로 되어 있으나, 내

용 제목과 관심 제목은 공히 『승평문헌록』으로 되어 있다. 『승평문헌록』은 의성 비안의 순천 장씨가에 전승되던 선대의 문헌들을 후손 장규섭(張奎燮)이 경자년(1900)에 편집·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에 장규섭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은 ‘고종이 등극한 지 37년’이라는 뜻이므로 임술년(1922)이 아니라 경자년(1900)이 된다.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하고 인쇄하였다. 장서각 아카이브에서 복간본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승평문헌록』의 ‘절도공실록(節度公實錄)’과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이다. 절도공은 장시규를 가리키고, 소절도공은 장한상을 가리킨다. ‘절도공실록’과 ‘소절도공실록’은 앞에서 살펴본 『절도공양세실록』의 체계와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코 『절도공양세비명』의 체계가 아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울릉도사적」이 누락된 점이다. 왜 누락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표 2〉 『승평문헌록』 목록 비교표⁷⁾

초간본 목록	복간본 목록	비고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 白川書院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三 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遺事後敘一遺事後敘三 (개수 차이는 없음) 白川書院奉安文→奉安文
二隱公事蹟 墓碑文	二隱公事蹟	초간본의 墓碑文이 복간본에서는 삭제됨
三隱公事蹟 行狀略	三隱公事蹟 行狀	行狀略→行狀

7 의성 안계에 거주하는 절도공의 방예(傍裔) 장자진(張子鎭) 옹께서 『승평문헌록』 초간본과 복간본, 그리고 『순천장씨족보』(1, 2) 등 4책을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하여 주셔서 이 표의 작성이 가능했음을 밝힌다. 옹께서는 손수 경덕사와 절도공의 묘소에까지 안내를 해주셨다. 옹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文巖公行蹟 墓誌 序 白川精舍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文巖公行蹟 墓誌 序 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白川精舍奉安文→奉安文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文獻錄跋	文獻錄跋	목록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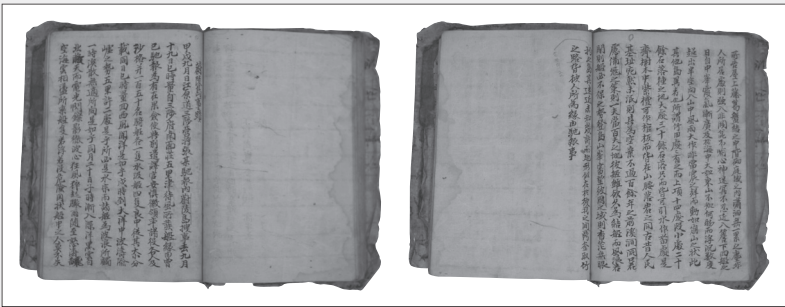
복간본은 아마도 1977년 『순천장씨족보』(전2권)를 편찬 간행하면서 『승평 문헌록』 초간본의 잘못된 곳을 수정하여 복간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서 보듯 초간본의 몇 글자를 삭제하였고, 또 이은공사적(二隱公事蹟)에 수록된 묘비문을 삭제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삭제된 묘비문 시작 부분에 장규섭의 이름이 보인다.

IV. 『교동수사공만제록』의 「울릉도사적」 추가 발견

이주 최근에 경덕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교동수사공만제록(喬桐水使公輓祭錄)』에 또 다른 필사본 「울릉도사적」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고,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부탁하여 사진 자료를 제공받아 내용을 살펴볼 수 있

었다. 그리고 『교동수사공만사(喬桐水使公輓辭)』도 함께 받아 검토하였는데, 『교동수사공만사』는 『교동수사공만제록』에서 만사만을 뽑아내어 만사를 지은 저자들의 인물 비중을 고려하여 재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교동수사공만제록』의 구성을 살펴보자. 교동수사공은 장한상의 부친 장시규를 말한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장시규에 대한 만사(輓辭)들이 실려 있고, 이어서 숙종 임금의 장시규에 대한 사제문(致祭文)이라는 이



〈사진 3〉 『교동수사공만제록』의 「울릉도사적」 첫 면(왼쪽)과 마지막 면(의성조문국박물관 제공)

름으로 실려 있고, 그다음 장시규의 묘갈명이 있으며, 이어서 ‘경화장상공삼 경첩운(敬和張相公三慶帖韻)’이 서문과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장한상의 사제문, 행장이 들어가 있다. 이어서 다시 장시규의 ‘무자방목급사환년조(戊子榜目及仕宦年条)’, ‘정묘생갑계현(丁卯生甲契憲)’ 및 ‘좌목(座目)’이 실려 있다. 그다음에 다시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상당량의 제문들이 실려 있다.

책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자료 관리자가 책의 앞부분에 만사와 치제문이 실려 있어서 『교동수사공만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다른 곳에 실리지 않은 장한상의 행장과 제문들이 실려 있다. 또 「울릉도사적」도 실려 있는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필사본이 『절도공양세비명』과 『절도공양세실록』에 들어 있는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사적」 3종에서 상호간 글자 출입이 어떠한지 몇 가지 예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 3〉「울릉도사적」 3종 글자 출입표

『교동수사공민제록』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실록』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비명』 「울릉도사적」	
張某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搜事	1면 1행	被討事	1면 2행	被討事	1면 2행
領率	1면 3행	領來	2면 2행	領來	1면 5행
水汲船	1면 4행	汲水船	2면 3행	汲水船	1면 6행
自北蔽天	1면 8행	自此蔽天	2면 7행	自此蔽天	2면 4행
東西北三處, 亦有篋竹田十一處	3면 2행	누락	4면 2행	누락	4면 7행
四望遠近	3면 6행	西望遠近	4면 7행	西望遠近	5면 6행
又有石葬十五所, 北方長谷	3면 7행	누락	4면 8행	누락	5면 7행
西南大谷有人居基 址七所	3면 9행	누락	4면 9행	누락	5면 8행
猫鼠	5면 1행	猫兒	6면 1행	猫兒	8면 2행
十四處	8면 5행	四五處	10면 3행	四千處	14면 6행
馳報事	9면 2행	馳報狀	10면 10행	馳報狀	15면 7행

* 세 책 모두 면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울릉도사적」이라는 제목이 있는 면을 1면으로 삼아 면수를 표시하고, 행수는 제목을 빼고 1행부터 표시하였다.

V. 『와유록』의 「울릉도」와 『서계잡록』의 「울릉도」

「울릉도」가 실려 있는 『와유록(臥遊錄)』은 12권 12책의 한문필사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도서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표점·영인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의 편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근자의 연구에 따르면⁸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아들 남학명(南鶴鳴, 1654~1722)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학명은 문집 『회은집(晦隱集)』과 『명산기영(名山記詠)』, 『와유록』을 남겼다. 남학명이 『와유록』을 편찬한 사실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서계집』 제8권에 실린 「와유록서(臥遊錄序)」를 통해 알 수 있다.

8 김영진, 2015,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238~239쪽.

남생 학명(南生鶴鳴)은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벽(性癖)이 있다. 그중에 산수의 유람을 특히 좋아하여 그 발길이 닿은 곳과 눈길이 미친 곳이 이 땅의 반이나 될 정도이니, 그야말로 세속을 초탈하여 고금(古今)의 비루한 자취를 씻어 내었을 것이다. 게다가 또 옛사람들의 산수에 대한 기문(記文)을 많이 수집하여 이를 ‘와유록(臥遊錄)’이라 이름하였으니, 아침저녁으로 펼쳐 보며 이를 통해 직접 유람하는 수고를 대신하고, 그 힘으로 다 볼 수 없는 것을 다 구경하였을 것이다.⁹

『명산기영』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3권 3책의 필사본인데, 의춘세가(宜春世家), 남학명인(南鶴鳴印), 자문장서(子聞藏書) 등의 인기(印記)로 미루어 남학명이 편찬한 것이며, 내용상 장서각 도서 『와유록』의 저본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⁰

한편, 독도와 관련하여 안용복 사건, 울릉도 쟁계, 장한상의 울릉도 수도는 남구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박세당은 남학명의 고모부로서 남구만과는 처남매부 사이이다. 박세당은 중년 이후 관직을 포기하고 은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두 집안은 소론의 핵심 가문이었다. 남학명은 박세당의 아들 박태보(朴泰輔, 1654~1689)와도 고종사촌 간으로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박태보의 여행기가 『와유록』에 실려 있다.

다음으로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대해 살펴보자. 유미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에” “서계 박세당의 11대손 박찬호씨”가 장서각에 ‘서계 종택 고문서’를 기탁하면서 알려졌다. 이때 공개된 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실려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이 소개¹¹되었다”고 한다.¹²

『서계잡록』의 「울릉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학명의 『와유록』에서 필사한 부분, 둘째, 군관 최세철이 본진의 수도

9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에서 검색 인용.

10 이종묵, 2004,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99~100쪽.

11 (인용문의 원주)김기혁·윤용출, 2006,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4쪽.

12 유미림, 2013, 앞의 책, 54쪽.

전에 울릉도를 정탐하고 온 사실에 대한 장한상의 보고, 셋째, 장한상 자신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와서 비변사에 올린 보고이다. 『서계잡록』 「울릉도」의 앞부분과 『와유록』의 「울릉도」가 같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서계잡록』의 「울릉도」에서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유미림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와유록』의 「울릉도」는 ‘지지(地誌)’가 그 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건대 여기서 말한 ‘지지’란 『동국여지승람』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지지’ 내용은 앞부분까지이고 뒷부분, 즉 승려의 언급 부분은 ‘지지’에는 없다. 박세당의 글을 일부 추출하여 『와유록』에 실으면서 편자가 출전을 ‘지지’라고 밝힌 듯하다. 승려로부터의 전문(傳聞) 부분은 박세당의 글에 처음 보이기 때문이다.¹³

유미림 박사는 『와유록』 「울릉도」의 편자가 박세당의 『서계잡록』 「울릉도」에서 ‘승려로부터의 전문(傳聞) 부분’을 가져온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와유록』의 「울릉도」는 저자가 박세당이건 무명씨이건 한 사람이 작성한 완결성을 갖춘 글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와유록』의 편자 남학명이 고모부 박세당의 글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울릉도」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남학명이 찬(撰)한 것이지 편(編)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했을 경우일지라도 인용처를 밝히면서 자찬(自撰)이라고 밝혔을 것이다. 만약 『와유록』의 「울릉도」가 박세당의 글이라면, 편자 남학명은 박세당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받은 처지에 고모부 박세당이 찬하였다고 밝혔지, 출처를 ‘지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미림 박사의 말을 달리 해석하여 『와유록』의 편자가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일부 가지고 온 것이 『와유록』의 「울릉도」라면, 이 또한 편자 남학명은 찬자를 ‘박세당’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며,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계속되는

13 유미림, 2013, 앞의 책, 55~56쪽.

장한상의 수토 기록도 함께 수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승려가 전해준 이야기보다 장한상의 수토가 훨씬 값어치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남학명의 『와유록』보다 늦게 편찬된 규장각 도서 『와유록』(7책)에 실려 있는 조한기의 「울릉도수토기」의 예를 보더라도, 남학명이 장한상의 수토기를 뺄 이유가 없다.¹⁴

따라서 필자는 『서계잡록』의 「울릉도」가 『와유록』의 「울릉도」를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뒤에 장한상의 수토 기록을 입수하자, 이미 필사해 놓은 「울릉도」에 붙여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박세당은 남학명의 『와유록』에 서문을 써주었는데, 이때 『와유록』을 보았을 것이고 흥미 있는 내용을 필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박세당이 남학명의 『와유록』에 서문을 써준 시기를 1692년에서 1694년으로 비정한 연구가 있다.¹⁵ 서문이 1692~1694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보고는 1694년 9월과 10월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아 남학명의 『와유록』에 장한상의 수토 보고를 수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남겨둔다.

다음으로 『서계잡록』 「울릉도」에 실린 군관 최세철의 울릉도 사전 정탐에 대한 장한상의 보고는 다른 관찬 사료에도 없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도 없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서계잡록』 「울릉도」와 「울릉도사적」의 공통 부분, 바로 장한상 자신의 울릉도 수토 보고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두 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왜 달라졌을까?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울릉도사적」에는 울릉도에서 육지로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반면 『서계잡록』 「울릉도」에는 귀환하는 과정과 치보(馳報, 보고서)¹⁶가 지체된 연유까지

14 물론 장한상의 수토 기록이 군국의 기밀에 해당하여 일부러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15 김영진, 2015, 앞의 논문, 238~239쪽.

16 유미림 박사는 “그의 집안이 소장해 오던 「울릉도사적」이 치보 형태인 것으로 보아 비변사에 보냈다는 보고서도 「울릉도사적」과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유미림, 2013, 앞의 책, 68쪽.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도사적」이라는 제목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울릉도사적」 작성의 토대가 되었던 문서는 강원감영이 장한상의 치보를 받은 다음 그 치보를 내용으로 첨부하여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狀啓)였을 것이다.¹⁷ 현재 그 장계가 관찬 사료에 전하지 않지만, 등사본 「울릉도사적」에 장계의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이 제목은 장한상이 붙인 제목은 아닐 것이다. ‘사적’이라는 말은 ‘실기(實記)’ 또는 ‘실록’, ‘유사(遺事)’라는 용어와 같이 후손들이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VI. 「울릉도」와 「울릉도사적」 그리고 독도

독도 연구자들 사이에 『와유록』과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공히 보이는 아래 인용문과 「울릉도사적」의 독도 목격 부분을 연관시켜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문장이다. 두 본 사이에 글자의 출입이 있으므로 『와유록』의 「울릉도」에서 인용한다.

盖二島去此不甚遠，一颿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清朗，不登最高頂，則不可見。鬱陵稍峻，風浪息，則尋常可見。麋鹿熊羆，往往越海出來，朝日纔高三丈，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먼저 최장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대개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

17 배재홍 교수는 장한상이 비변사에 보고하고, 비변사가 승정원을 통하여 왕에게 보고한 보고서에서 「울릉도사적」을 등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울릉도사적」이 감영에서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狀啓)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본다. 삼척영장 및 삼척첨사는 강원감영에 속한 관리이기 때문에 강원감영에 치보를 하고, 강원감사는 이 치보를 첨부하여 비변사에 장계(狀啓)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서행정의 방식이었다. 치보라는 용어는 지방관이 감사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을 일컫고 감사가 비변사에 올리는 문서 양식을 장계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아주 맑지 않거나 (울릉도에서)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가 조금 더 높다. 풍량이 잦아들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다. 미록웅장(麋鹿熊嶺)이 이따금 바다를 건너 나온다. 아침 해의 높이가 겨우 3장일 때에 섬 안의 황작(황새나 꿩꼬리) 무리가 죽변곶(串)에 날아와 앉는다.¹⁸

이렇게 번역하고 나서 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아주 맑지 않거나 (울릉도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울릉도와 우산도입에 분명하다. 동해에 있는 섬 중에 울릉도에서 날씨가 아주 맑아야 보이는 섬은 지금의 ‘우산도(독도)’뿐이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야만 보이는 곳은 지금의 ‘우산도(독도)’뿐이다.¹⁹

최 교수는 위 인용문의 ‘去此’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곳으로부터’는 ‘육지로부터’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누락하고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섬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해석한 것은 글의 원 뜻을 크게 오독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유미림 박사의 번역을 살펴보자.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²⁰

18 최장근, 2013, 「독도 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찰」, 『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독도연구보존협회 2013년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 48쪽.

19 최장근, 2013, 앞의 글, 48쪽.

20 유미림, 2013, 앞의 책, 60쪽 및 372쪽.

이 번역문을 근거로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장한상이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 데…」라고 한 것이 ‘우산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본다면, 박세당의 언급은 장한상의 언급과 서로 부합된다는 점이다. 장한상이 말한 섬은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고,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 역시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곳에 서만 보이는 섬이므로 둘 다 울릉도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와 장한상이 말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은 같은 섬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박세당에 따르면,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 섬이다.²¹

두 사람 모두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읽어 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목격했는 것과 연관시켰다. 그러나 필자는 위 인용문이 육지에서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부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늘상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시습, 곰, 노루 등이 간간히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곶에 내려와 앉는다.

21 유미림, 2013, 앞의 책, 61쪽.

필자는 이 부분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우산도·울릉도 조의 첫머리 언급²²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육지(평해, 죽변 등)에서 멀지 않아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육지에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 울릉도와 우산도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와유록』에는 이산해의 「울릉도설(蔚陵島說)」도 「울릉도」와 함께 실려 있는데, 이산해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리(文理)를 무시한 번역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Ⅶ. 맺음말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자국의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를 계기로 울릉도 수토제도가 법제로 확립되어 1894년까지 200년간 이 제도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울릉도를 수토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울릉도사적」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측하고 그 거리와 크기까지 묘사되어 있어서 조선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제고시켰다. 이 글은 「울릉도사적」의 필사본 2종 추가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된 연구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필사된 연도를 재검토하였다. 1722년에 필사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어도 1782년 이후에 필사

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5, 蔚珍縣, “于山島·鬱陵島…風便則二日可到.”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필사 시기가 늦추어진다고 하여 장한상이 울릉도를 수토한 연도가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필사 시기가 늦추어진다고 해도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둘째,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들 책자의 주요 내용이 순천 장씨 가문의 문적인 『승평문헌록』에 수록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아주 최근에 공개된 『교동수사공만제록』을 소개하였다.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나머지 2종의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임을 밝혔다.

넷째, 「울릉도사적」은 이른바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와유록』의 「울릉도」를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서계잡록』의 「울릉도」 중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와유록』의 「울릉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과 다름이 없으며, 「울릉도사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다.

국문초록

이 글은 「울릉도사적」의 필사본 2종 추가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필사된 연도를 재검토하였다. 1722년에 필사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어도 1782년 이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들 책자의 주요 내용이 순천 장씨 가문의 문적인 『승평문헌록』에 수록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아주 최근에 공개된 『교동수사공만제록』을 소개하였다.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나머지 2종의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임을 밝혔다.

넷째, 「울릉도사적」은 이른바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와유록』의 「울릉도」를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서계잡록』의 「울릉도」 중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나타난 '멀리 동남쪽에 보이는 섬(독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와유록』의 「울릉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과 다름이 없으며, 「울릉도사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장한상,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비명, 절도공양세실록, 교동수사공만제록, 승평문헌록

ABSTRACT

A Philological Research of Jang Han-sang's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Rhee, Wontaek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rrect copy-written year of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in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and to introduce another two copies of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discovered in 2014 and 2018.

In 1694, Jang Han-sang's military units patrol governance activities around Ulleungdo Irelands are recorded at official document and reported to royal government. That document made various written copies. Those copies prove the government-rule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Joseon Dynasty.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in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has been regarded as being copy-written in 1722. However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has contained the epitaph of Jang Han-sang. Thus, I suggest that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was copy-written in 1782 or after.

In 2018, I found two different copies of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through investigations of the relics of Jang Han-sang's shrine, Gyeongdeoksa(景德祠) and Uiseongjomunguk Museum in Gyeongbuk Province. The two copies are contained in the *Funeral Poetry to Kyodong Port Admiral Jang(喬桐水使公輓祭錄)* and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In this paper, I compare the three cop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each other.

Keywords

Jang Han-sang,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Funeral Poetry to Kyodong Port Admiral Jang(喬桐水使公輓祭錄)*

참고문헌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喬桐水使公輓辭』, 『喬桐水使公輓祭錄』, 『昇平文獻錄』, 『臥遊錄』, 『西溪雜錄』, 『東國輿地勝覽』

김기혁·윤용출, 2006,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영진, 2015,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이종목, 2004,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최장근, 2013, 「독도 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찰」, 『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독도연구보존협회 2013년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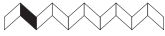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_의성 경덕사 소장 고문서 및 유물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1,04430000,37&pageNo=5_2_1_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검색서비스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홍성근 ·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지난 2018년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날로부터 3월 15일까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용 수정 없이 3월 30일 확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에는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발표하였다.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가 작성하고 전문가 총척, 각 교과목별 목표와 내용, 그리고 지도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학습지도요령의 대강(大綱)적인 교육과정 기준을 교과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 논문 투고일: 2018. 10. 10. 심사 완료일: 2018. 11. 15. 게재 확정일: 2018. 11. 19.

1 “학교교육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省令案) 및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안에 대한 의견공모 절차(Public Comment)의 실시에 관하여”(일본 전자 정부 종합창구):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_SNAME=PCMMSTDETAIL&id=185000958&Mode=0(2018. 3. 11. 방문).



갖는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따라 교과서가 편집되고 또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은 약 10년마다 개정하고 일반적으로 교과서 작성과 내용 주지를 위해서 3~4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실시된다.

이번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핵심 키워드는 ‘다면적·다각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유토리(여유) 교육’에서 탈피한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었다.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보면 실제로 ‘다면적’, ‘다각적’이란 단어가 수차례 반복 기술되어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애국심과 함께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서 서로 모순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는 부분이 문제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주관하는 검정교과서의 편집과 집필, 검정 과정 등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명기한 것은 아베 정부의 교육 ‘재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영토교육 강화의 결과이다. 2018년 7월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리·역사 및 공민 과목의 독도 등 영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신학습지도요령의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특례를 정하는 사항도 공고하였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교육정책도 현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초에는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독도 등 영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3년 앞당겨 2019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영토교육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² 정부 방침과 의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해서 영토 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교과서 기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에 대해서도 2018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8월 30일 그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 참조.

이미 2017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 2월 14일 개정안이 발표되어, 3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3월 31일 확정, 발표하였다. 그 후 2017년 6월 21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 발표하였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기초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7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추진해왔던 독도 교육 강화 내지는 독도 관련 국내적 여론 확산의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³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 교육 강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독도 교육이나 정책 방안을 간략히 점검하고 대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교과서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이원순·정재정 편저, 2002,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신주백, 2014, 『역사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 만들기』, 선인 등을 참조.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2014,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8』,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II. 초·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1. 초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1) 초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등학교의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남쿠릴열도(북방영토는 일본식 명칭), 센카쿠제도(다오위다오는 중국식 명칭)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2017년 3월 31일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영토 범위와 관련하여, “죽도(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이라고 명기하였다(표 1) 참조.

〈표 1〉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8년 3월)	개정 학습지도요령 (2017년 3월 31일)
사회	없음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

당초 일본 정부는 2017년 2월 14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발표 이후 약 1개월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안은 내용 수정 없이 3월 31일 확정, 고시되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반 일본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에서 ‘고유’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유영토의 의미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던” 영토라고 설명하였다(표 2) 참조.

일본 정부가 독도 고유영토론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공식 입장을 공개 표명하였다. 즉 ‘예로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입장

에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공식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해석은 기존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개념 규정과,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2〉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의견에 대한 회답(2017년 3월 31일)⁴

의견번호	해당개소	의견내용	회답
63	사회	죽도와 센카쿠를 일본의 영토로 표명하는 것에 이론은 없지만 ‘고유의’라고 하는 것은 피할 것. 어디까지나 하나의 보는 시각이지, 그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소학교 사회과,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 공민분야]에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2) 초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7년 3월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확정·고시에 이어서 2017년 6월 21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개정되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남쿠릴열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독도에 관한 내용 기술은 없다. 하지만 2017년 6월 21일 발표된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사회 교과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토대로 지도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기간에 논의되었던 고유영토의 의미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명기하였다. 즉 ‘영토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추

4 平成29年3月31日, 学校教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並びに幼稚園教育要領案、小学校教育指導要領案及び中学校学習指導要領案に対する意見公募手続き(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일본 전자 정부 종합창구):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57166/2017.11.24.방문>.

〈표 3〉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학습지도요령 해설 (2008년 6월)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7년 6월 21일)
사회과 (5학년)	영토에 대해서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가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p>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 (중략)</p> <p>영토의 범위에 대해서 지도할 때에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센카쿠제도는 <u>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u>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p> <p>또한 죽도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죽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과,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p> <p>나아가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p> <p>그때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도하도록 한다.</p>

가였다. 즉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의미를 독도가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는 영토’라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표 3〉 참조). 이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의미를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였다’가 아니라,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로 설명함으로써, 고유영토설에 대한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1) 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2017년 3월 31일 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이 초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함께 확정, 고시되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지리적 분야에 남쿠릴열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독도에 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사회 교과 내의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 공

민적 분야에 다음과 같이 독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1) 지리적 분야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남쿠릴열도만 언급하였으나,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를 명기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남쿠릴열도, 독도, 센카쿠제도가 모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되었다. 그런데 남쿠릴열도와 독도를 둘러싸고는 영토문제가 있으나,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제도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 역사적 분야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영토의 확정 등에 대해 다루되, 독도를 남쿠릴열도와 센카쿠제도와 함께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영토의 편입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기술했다.

(3) 공민적 분야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개정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와 남쿠릴열도, 센카쿠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표 4>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8년 3월)	개정 학습지도요령 (2017년 3월 31일)
사회과	지리적 분야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영토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
	역사적 분야	(언급 없음)	영토의 확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면서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공민적 분야	(언급 없음)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와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하는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거론할 것

〈표 5〉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의견에 대한 회답
(2017년 3월 31일)⁵

의견번호	해당개소	의견내용	회답
62	사회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하는 것과, 센카쿠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이에 더해 왜 고유의 영토인지, 그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필요.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에서 “부국강병·식산흥업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 하에 새로운 정부가 실행한, 폐번치현(廢藩置縣), 학제(學制)·병제(兵制)·세제(稅制) 개혁, 신분제도 폐지, 영토 확장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렇게 하면서 북방영토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죽도 및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의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있다. 즉 독도와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도록 했다. 반면, 센카쿠제도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도록 했다.

지난해(2017년) 2월 14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독도가 왜 일본 고유의 영토인지, 그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역사 분야에서 독도의 편입 및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의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대해 다루도록 함’이라고 답변했다(〈표 5〉 참조).

2) 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4년 1월에 일부 개정된 현행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사회편)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017년 6월 21일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에도 독도가 기술되었는데, 아래의 〈자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⁵ 平成29年3月31日, 学校教育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並びに幼稚園教育要領案、小学校学習指導要領案及び中学校学習指導要領案に対する意見公募手続(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일본 전자 정부 종합청구):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57166/2017.11.24.방문>.

이전보다 양적으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분야

지리적 분야에서는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과 관련하여, “일본이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당면한 영토문제나 해양, 해저 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경제수역의 문제” 등을 다루는 것도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루도록 하였다.

독도에 관해서는 그 위치나 범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것과,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루고, 일본의 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2) 역사적 분야

역사적 분야에서는 ‘근대 국가의 형성’과 관련하여 ‘국경의 획정’이라는 부분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였다. 즉 ‘독도가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러한 영토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공민적 분야

공민적 분야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 주권의 존중과 협력’ 부분에서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관하여 다루되, 일본이 고유영토인 독도에 관해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과,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토문제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위, 그리고 도항(渡航) 및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고 있다거나,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진다든가,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 등 불법점거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을 기초로 행동하는 평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키

〈표 6〉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4년 1월 28일)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7년 6월 21일)
지리적 분야	<p>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도로후)와 죽도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러시아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를 지배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 위치 및 범위와 함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p>	<p>'영토의 범위와 변화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에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 (중략)</p> <p>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거론하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도로후)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동시에,</p> <p>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데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p> <p>또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p> <p>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 및 범위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p>
역사적 분야	<p>'영토의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획정을 비롯하여 류큐 문제와 홋카이도 개척을 다룬다. 그때에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도로후)가 일관되게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경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함과 동시에</p> <p>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죽도,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우도 언급한다. 또한 중국과 조선과의 외교도 다룬다.</p>	<p>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영토 편입한 경우에도 언급하며,</p> <p>이들 영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국과 조선과의 외교도 다루도록 한다.</p>

<p>공민적 분야</p>	<p>그때에 지리적 분야, 역사적 분야의 학습 성과를 토대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죽도와 관해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것과 현 상태에 이른 경우,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 우리나라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킨다. 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 우리나라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시키고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하는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킨다.</p>	<p>또한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관련시켜서 다루고,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할 것. (중략)</p> <p>그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지리적 분야에서의 '영역의 범위와 변화와 그 특색', 역사적 분야에서의 '영토의 확장' 등의 학습 성과를 참고하여</p> <p>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해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영토문제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우,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었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지고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왔거나 하는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주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는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	--	--

는 반면,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평화선 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III.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1.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1) 교과목별 독도 기술 내용

2018년 3월 30일 고시한 개정에서는 교과 및 과목 구성을 재편하였는데 핵심은 '지리총합(總合)'과 '역사총합', '공공(公共)' 등 3과목의 신설이다. 이들 신설 과목들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신설 과목을 통하여 자국 중심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영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치게 하였다.⁶ 영토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리·역사’ 교과에서는 ‘세계사탐구’를 제외하고, ‘지리총합’, ‘지리탐구’, ‘역사총합’, ‘일본사탐구’ 등 4개 과목에 독도를 명기하였다. ‘공민’ 교과에서는 ‘윤리’ 과목을 제외하고, ‘현대사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공공’과 ‘정치경제’ 등 2개 과목에 독도를 명기하였다. 각 교과목의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1)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지리총합’과 ‘지리탐구’는 별개의 과목이지만, 독도, 남쿠릴열도 등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고, 동시에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독도가 남쿠릴열도, 센카쿠제도와 같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다를 것을 명기하고 있다. 고유영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7년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를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서 다루되, 독도와 남쿠릴열도와 달리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타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6 종래 지리 A와 B, 역사(일본사와 세계사) A와 B로 과목을 구분하던 것을 A는 ‘총합’으로 B는 ‘탐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전반으로 여론이 나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社説, 2018. 2. 15.)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 「新設必修『歴史総合』偏向は正規定も 高校授業は変わるか」, 2018. 2. 24.) 등을 참조.

〈표 7〉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학습지도요령 (2009년 3월)		개정 학습지도요령 (2018년 3월 30일)	
지리 역사	세계사B (필수)	-	세계사 탐구 (선택)	-
	세계사A (필수)	-	역사총합 (필수)	또한 일본의 국민국가의 형성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는 것과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일본사A (선택)			
	일본사B (선택)	-	일본사 탐구 (선택)	메이지유신과 국민국가의 형성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지리A (선택)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연결 등에 대해서 파악하게 한다.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	지리총합 (필수)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죽도와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
지리B (선택)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 문제를 대관시킨다.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에 일본의 영토문제도 언급할 것.	지리탐구 (선택)	“영토문제의 현상이나 요인,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룰 때에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	
공민	현대사회	현대사회 또는 윤리/정치경제 (선택)	공공 (필수)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거론할 것.
	윤리		윤리 (선택)	-
	정치경제		정치경제 (선택)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거론할 것.

영유권 문제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⁷ 즉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도와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 '역사총합'과 '일본사탐구'

'역사총합'과 '일본사탐구'도 별개의 과목이지만, 독도, 남쿠릴열도 등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국민국가의 형성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확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역사 과목에서는 독도의 영토 편입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지리나 공민 등 다른 과목과 다른 점은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라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기술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교과 내용과도 동일하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1905년에 독도를, 1895년에 센카쿠제도를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 과목의 1905년 독도 영토 편입 기술은 지리 과목 등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에 근거한 고유영토설과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7세기부터 독도가 자국의 영토였다면, 1905년 새롭게 영토 편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1905년 타국이 점령한 형적이 없어서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17세기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7 Q4 영토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A4 일본 정부는 일반적으로 타국과의 사이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토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 관여된 영토문제는 러시아와의 사이의 북방영토문제 및 한국과의 사이의 죽도 문제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erritory/page1w_000013.htm#q4 (2018. 3. 11. 방문).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은폐하고자 1905년의 독도 영토 편입을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 재확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05년 이전에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떠한 영유 의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이 실증해 주고 있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 당시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내린 지령으로 ‘울릉도 외 1도 곧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3) ‘공공’과 ‘정치경제’

‘공공’과 ‘정치경제’ 과목도 별개의 과목이지만, 독도, 남쿠릴열도 등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공’과 ‘정치경제’ 과목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 기초하여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도록 했다. 여기서 평화적 수단은 ‘국제법의 의의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론하게 된다. 국제법상 평화적 수단이라고 하면 국제연합(UN) 헌장 제33조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을 말한다. 대개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의 수단으로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수단은 당사국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교과목별 독도 기술의 특징

앞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각 과목별로 독도 관련 기술에 내용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리 교과('지리총합', '지리탐구')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기초하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 교과('역사총합', '일본사탐구')에서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민 교과('공공', '정치경제')에서는 고유영토인 독도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2.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

지난 2018년 3월 30일 확정,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여 7월 17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고시되었다. 전체적으로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분량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영토 관련 기술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역사·지리' 경우는 현행보다 2배 이상 분량이 증가되었고, 내용을 보면 '내용 취급'에서의 기술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유의점 등의 설명 부분 기술이 대폭 증가하였다. 각 교과목별 독도 관련 내용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1) 지리

지리 교과('지리총합', '지리탐구')에서는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였다.

2) 역사

역사 교과(‘역사총합’, ‘일본사탐구’)에서는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 등의 학습에서 영토 획정 등을 다루도록 할 것. 이때에 북방영토를 언급함과 동시에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때에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3) 공민

공민 교과(‘공공’, ‘정치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일본)가 고유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해서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권문제

〈표 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개정 사항 비교

구분	현행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4년 1월 28일)	구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 (2018년 7월 17일)
지리 A/B	북방영토와 ‘죽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나, 각각 현재 러시아연방 및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입각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 지리총합 지리탐구	〈내용의 취급〉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이때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 〈유의점〉 우리나라가 당면한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의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을 거론하고, 국경이 갖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죽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p>일본사 A/B</p>	<p>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죽도'와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다루도록 한다.</p>	<p>역사</p>	<p>역사총합 역사탐구</p>	<p><내용의 취급>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 등의 학습에서 영토 획정 등을 다루도록 할 것. 이때에 북방영토를 언급함과 동시에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p> <p><유의점> '영토의 획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러시아 등과의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확정된 것을 다룬다. 이때에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되게 우리나라 영토로 국경 설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함과 동시에 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된 경위도 언급하고, 이들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현대사회 정치경제</p>	<p>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죽도'에 관해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현황에 다다른 경위,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p>	<p>공민</p>	<p>공공 정치경제</p>	<p><내용의 취급> '국가 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련시켜서 다루고,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해서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만 하는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론할 것.</p> <p><유의점> 이때에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중학교 사회과의 학습 성과를 토대로 국가 간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관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영토문제의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위,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실시되고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주권,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역할 등과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론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공민 교과에서는 '중학교 사회과의 학습 성과를 토대'로 라고 함으로써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학습을 연계시켜서 영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토문제의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위,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 과거 일본인 사상자 발생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으로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주권, 국제법, 국제기구의 역할 등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요구하였다.

공민 교과에서는 일본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거하여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국가로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앞서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설에서도 지리와 공민 교과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 역사 교과에서는 ‘영토 편입’, 그리고 공민 교과에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일본의 노력 등으로 나누어서 각 교과별로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각 과목(지리, 역사, 공민)에서 반복 기술하였다.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독도 기술 내용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자율성 저하,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기술 내용 통제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종래 남쿠릴열도와 독도라는 순서로 열거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독도를 남쿠릴열도보다 먼저 기술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일본이 영토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와 독도의 비중이 차이가 없어지고 독도에 대한 일본 국내 인식 제고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개정, 발표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영토 관련 기술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보면, 전체 분량이 현행 학습지도요령과 해설보다 훨씬 증가

하였다.⁸ 이전에 없던 전문을 추가하였고 총칙부터 과목의 내용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하였기 때문인데, 종래 학습지도요령을 이제 ‘대강적(大綱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과서 기술과 검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 내용이 상세하게 되면 교육 현장의 자율재량을 축소시키고 교과서 편집과 검정 과정에서의 자율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통해 애국심과 공공의 정신, 전통과 문화 등 특정 가치관을 교육 현장에 ‘강요’하고 정부 방침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힘을 기른다’는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다. 특히 영토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일본 학생들은 상대국의 입장에 무관심하게 되고, 자국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초등학교 사회과, 중학교 지리와 역사, 공민 분야, 고등학교의 역사 총합, 지리 총합, 공공 등 여러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왜곡’되게 교육받을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통해 본 일본의 독도 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독

〈표 9〉 개정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핵심 내용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5학년)	일본 고유영토	지리	일본 고유영토	지리총합	일본 고유영토
				지리탐구	일본 고유영토
		역사	독도 영토 편입	역사총합	독도 영토 편입
				일본사탐구	독도 영토 편입
				세계사탐구	(언급 없음)
		공민	평화적 해결	공공	평화적 해결
				윤리	(언급 없음)
				정치경제	평화적 해결

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의 경우,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356쪽이었는데 개정안은 652쪽으로 2배 가까이 분량이 증가하였다. 학습지도요령 해설도 각 과목별로 기술 내용이 약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내용 증가로 인해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과 함께 교과서 기술과 검정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이 검정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교육을 기초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점차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9 참조). 독도 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입장이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20년 4월부터, 중학교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시행되나, 독도 등 영토 관련 사항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2005년 3월 29일 일본 국회(참의원)에서 당시 문부과학성 장관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는 “독도라든가 센카쿠라든가 또는 북방4도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음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고쳐야 한다”고 발언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왜곡된 사실을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였다.⁹ 그의 발언이 있는 지 13년이 지난 2018년 결국 초·중·고의 모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되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이 기술된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첫째, 일본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의 의무화와 그 기반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본의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있다(고등학교의 경우, 제84조 및 96조). 동 법 시행규칙에는 교육과정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및 문부과학성 장관이 공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즉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한

9 자민당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의 질의에 대한 나카야마 장관의 답변에 관해서는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회의록 참조. 일본 제162회 국회 참의원 문부과학위원회 회의록 제5호(2005. 3. 29.) :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62/0061/16203290061005.pdf> (2018. 10. 9. 방문).

10 일본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84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문부과학 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위 학습지도 요령에서 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그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에 기초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일본의 미래 세대를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독도에 관한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은 사문화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일본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 소위 근린제국조항을 신설하였다.¹¹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 우익 성향의 단체나 일부 정치인들은 근린제국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다.¹² 그럼에도 한국 측에서는 근린제국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며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의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 것은 ‘근린제국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올립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독도에 관한 한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도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독도가 기술되기 이전에는 교과서 출판사나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 개선 활동, 그리고 우익 교과

11 근린제국조항은 초·중학교 사회과 또는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적 事象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근린제국조항에 대해서는 倭義文, 1997, 『教科書攻撃の深層』, 学習の友社 등을 참조.

12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의 교과서를 중국이나 한국이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술이 아니라면, 이에 개의치 말고 담담하게 사실을 기술하면 된다”고 하면서 근린제국조항의 폐지를 주장한 바도 있다. 中川昭一, 2008, 『飛翔する日本』, 講談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176~177쪽.

서 불채택 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운동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도에 관한 한 각급 학교의 대부분의 사회과 교과서(세계사탐구, 윤리 제외)가 2005년 후쇼사 교과서보다 더한 내용으로 개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각 교과서 출판사마다 독도 관련 기술의 내용이 나 분량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따라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간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국내적 측면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은 매우 진전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된다. 독도 교재가 초·중·고 각 학교 급별로 있고, 독도 교육이 학교와 그 밖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측면이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만큼 그 개약의 심각성은 그 어느 것보다 엄중하다.

이제 일본으로서 남은 카드라고 한다면, 일본은 이른바 ‘죽도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는 것과, 그에 따른 전국 규모의 ‘죽도의 날’ 행사 추진,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제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쿠릴열도문제나 센카쿠제도문제’ 등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독도 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독도 교육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독도 교육도 바람직한 인간상 추구 등 본래적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사회의 독도에 관한 인식 변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일본 국민들과의 상호 우호 교류는 더욱 더 깊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과 해설(解説) 개정에 이어, 2018년 3월 30일과 7월 17일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각각 개정,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대강(大綱)적인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교과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은 교육 목표를 반복하여 명시하고 세세한 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어서 기술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통하여 교육 전반에 대해서 ‘통제’하며, 교과서 편집과 집필은 물론 수업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아베 총리의 1기 집권 때에 교육의 헌법이라는 교육기본법을 60여 년 만에 개정하여 애국심 함양을 교육 목표로 설정한 이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우익세력의 주장을 교육 현장에 반영한 결과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번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서는 현 아베 정부에서 강조해 온 ‘애국심’ 교육과 함께 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으로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하였다는 점은 문제이다. 향후 정부 방침과 의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해서 초·중·고 교과서 기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 학교교육에 적용될 것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영토교육 강화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고 교과서 기술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 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기초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점차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영토교육에서는 상대국의 입장을 가르치지 않고 자국의 입장만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인데 영토교육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 방안으로 독도 교육의 내실화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독도,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

ABSTRACT

The Issues with Dokdo-related Narrative in Japanese Government's 2017~2018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Hong, Seongkeun · Seo, Chongchin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apan's Government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學習指導要領) and its Commentary(學習指導要領解説) on March 30th and July 17th of 2018,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Guidelines and their Commentari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2017.

Until now, the Curriculum Guideline which has a legally binding nature has suggested the standard of curriculum and has been described in more details by the Commentary. However, this revised version clearly repeats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describes the contents and method of education in details; thus, it increases the amount of tex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lies an intent to 'control' the overall educ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curriculum guidelines and commentaries. This revision decide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extbooks as well as the teaching in the class.

In 2006, during the first term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the Basic Law of Education, perceived as the Constitution of Education, was revised in more than 60 years. In this revision, promotion of patriotism was set as one of the educational goals. Under the name of 'reformation', the opinions of conservative right wing parties were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context, and it resulted in the revision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and commentarie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se revised guidelines reinforce the territorial issues related education in line with the 'patriotic' education emphasized by the current Abe government. It is also a problem that Dokdo, the territory of Korea, is specified in the Guideline as 'the territory of Japan'.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would be considerable changes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due to the new guidelin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y and intention.

The revised guidelines will be sequentially applie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from 2020. Under the Abe regime, reinforcement of territorial education will be gradually institutionalized, and the Dokdo-related narrative in textbooks will increase in quantity and deteriorate in quality. The Dokdo related education in Japan will steadily and systematically become more concrete as it goes to higher grade schools based on Dokdo 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the territorial issues related education of Japan, it is also a problem to teach the position of the home country al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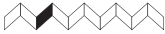
without teaching the position of the other countries. Moreover, it becomes more problematic when the content of territorial issues related education is distorted. As Korea's domestic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Dokdo related education in practical terms.

Keywords

Dokdo, Japanese textbook, Curriculum Guideline(學習指導要領), Curriculum Guideline Commentary(學習指導要領解説)

참고문헌

-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호.
- 서종진, 2014,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8호.
- 신주백, 2014, 『역사화해와 동아시아형 미래 만들기』, 선인.
- 심정보, 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호.
- 이원순·정재정 편저, 2002, 『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동방미디어.
-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호.
- 依義文, 1997, 『教科書攻撃の深層』, 学習の友社.
- 高橋哲哉·依義文·石山久男·村田智子, 2005, 『戦争への教育』, 学習の友社.
- 中川昭一, 2008, 『飛翔する日本』, 講談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 朝日新聞社, 2018.2.15, 「社説 高校指導要領 木に竹を接ぐおかしさ」, 『朝日新聞』.
- 産経新聞社, 2018.2.24, 「新設必修『歴史総合』偏向是正規定も 高校授業は変わるか」, 『産経新聞』.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현행, 개정)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현행, 개정)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현행, 개정)
- 일본 전자 정부 종합창구 홈페이지: <http://search.e-gov.go.jp>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 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홈페이지: <http://kokkai.ndl.go.jp>
- 일본 국회 제162회 참의원 문부과학위원회 회의록 제5호(2005. 3. 29.)
-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http://www.shugiin.go.jp>
-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http://www.sangiin.go.jp>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홍정은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sciences,
University of West Georgia

I. 머리말

영국은 국제 관련 기구의 지명 표준화 기구와 전문가회의에서 핵심 국가인 동시에 전통적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에서 영국은 미국과 함께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지명과 관련한 유엔과 관련 국제 기구에서 이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하다. 이러한 국가적 위상과 공용어로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영국의 신문사와 방송사의 동해 표기 정도는 다른 국가와 언어권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주요 일간지 중의 하나인 ‘더가디언(The Guardian)’ 인터넷 홈페이지는 영어로 발간되는 신문 중에서 ‘데일리메일(Daily Mail)’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모니터링 기관인 com-

* 논문 투고일: 2018. 10. 10. 심사 완료일: 2018. 11. 4. 게재 확정일: 2018. 11. 19.

Score에 따르면 영어 신문 중에서 월간 인터넷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1위는 데일리메일(Daily Mail)로 약 5천 5백만, 2위는 더가디언(The Guardian)으로 약 4천 2백만, 3위로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4천 1백만이라고 발표하였다(2014년 10월 21일 현재, <http://goo.gl/gyxxMm>). 이처럼 영국의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동해 표기는 일반인들의 동해 표기 확산과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 주요 언론사의 기사와 방송 뉴스에서 '동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는 것은 동해 표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영국 지명 관련 정부 기관의 정책은 하나의 외국 지명에 대해서는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기준으로 하나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과 논조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 동해가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동해 표기에 대한 영국 언론의 방식과 접근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정당성을 이해시키고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의 동해 표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접근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표기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동해 표기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 제작과 지명 표기에서 영향력이 지배적인 영국을 대상으로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의 동해 표기 현황과 표기 명칭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각 국가의 정부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학교 교과서 및 정부 부처 소속의 지도제작사의 표기 현황에 주된 관심을 가져 온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초점을 둔 자율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는 민간 부문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비록 영국 정부 입장이 전통적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의 지도 제작 주체들과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 논리와 독지층의 수준과 요구에 입각하여 동해 병기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과 영국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도 일본해 단독 표기의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해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정부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의 동해 표기 현황과 표기 명칭에 대한 세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부문, 특히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각 언론사별로 자율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동해 표기 현황과 표기 명칭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동해 표기 및 동해 병기에 대한 전략과 정책 수립 및 관련 실행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해 지명에 대한 국내 연구는 고지도와 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보경, 2004; 이상태, 2004; 정인철, 2010), 지명 표기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김택주, 1999; 이기석, 1998; 주성재, 2007/2010; 김신, 2011; 최종남 외, 2011; 박찬호, 2012; 김순배 등, 2015), 국내외 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지명을 비교 분석한 연구(손용택·한관중, 2006; 심정보, 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동해에 대한 인식(이승수·오일환, 2010)과 장소 정체성(이영희, 2010), 동해의 해양학 및 해저 지형의 명명(한상복, 1992; 최진용·권영락, 2006), 일본에서의 일본해 지명의 연구 동향(심정보, 2007), 토착 지명 관점에서의 연구(주성재, 2009), 일본해의 비판적 검토(김호동, 2011), 동해와 해역 명칭 분쟁 관련(상선희, 2011), 국제법 관련(김택주, 1999)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언론사 대상으로 동해 표기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이상균·김영훈, 2015; 임은진·이상균, 2016).

최근 이루어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연구는 영연방 언론사를

1 영국 정부의 대외적인 지명 관련 정책 및 업무는 '영국지명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동일하게 외국 지명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지명으로 표준화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동해(East Sea) 표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가 동해보다 더 알려져 있다는 자체 판단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2015.12.5. 영국지명위원회 위원과의 비공식 개인면담).

대상으로 한 연구(김영훈 외, 2018)와 불어 및 불어권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상균·김영훈, 2015; 임은진·이상균, 2016)가 대표적이다. 이상균·김영훈(2015)은 프랑스 민간 지도제작사 및 언론사에서 표기된 동해 관련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고, 임은진·이상균(2016) 연구에서는 불어권 국가 중에서 벨기에, 알제리, 캐나다 불어권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동해 표기에 있어 언론사 지침이나 기자의 경향도 어느 정도 동해 표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분석되었다(김영훈 외, 2018; 임은진·이상균,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의 주류인 미국과 영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표기 현황을 비롯하여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표기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임은진·이상균(2016)은 언론사별로 각각 다른 표기 원칙이 있음을 확인했고, 기자 혹은 기사를 다루는 측면에서 유연한 표기 방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영연방 언론사는 언론사의 표기 원칙과 함께 기자의 의사 결정에 따른 표기, 세계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였다(김영훈 외, 2018). 다만, 김영훈 외(2018)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도 영국 언론사 기자 접촉에 있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연구 차원에서는 언론사 담당자와의 면담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제약을 다시 확인하였다.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이기석(1998)은 일찍이 국제 기구에서의 동해 표기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동해 병기를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전략과 정책,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후 이기석(2004)은 국제 사회에서 앞으로 동해 명칭과 동해 표기에 대한 활동 상황과 일본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주성재(2009)는 최근 유엔지명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된 토착 지명이 갖는 지리적 실체에 대해 동해 지명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동해 지명이 토착 지명으로서 국제 기구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

고 있다. 이어 주성재(2010)는 동해 표기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주요 논쟁을 지칭학적 의미와 그에 근거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의 상선희(2012)는 지명 표기에 있어 동해 표기 문제는 아시아적 포괄주의와 상호 타협주의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명 표준화는 해역 명칭의 국제화와 육상 지명 명칭의 국제화로 나누어 대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성재(2012)는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총회 등에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동해 표기의 논쟁을 바탕으로 지리학적 연구 주제들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영국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별, 방송사별 일본해, 동해, 동해/일본해 병기 기사를 검색한다. 아울러 지도가 제시된 경우도 분석한다. 둘째, 기사 내용의 유형 분류(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등)를 통해 유형별 동해 표기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방송사와 신문사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신문사와 방송사의 동해 관련 기사의 수와 기사 당 분량, 기사 작성자(기자, 리포터, 프리랜서 등), 기사 제목, 기사 게재 시점 등의 언론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에서는 동해의 단독 표기,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일본해 단독 표기 등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 언론사는 신문사로서 더타임스(The Times), 더가디언(The Guardian), 인디펜던트(Independent), 데일리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를 선택하였고, 방송사로는 비비시(BBC), 아이티브이(ITV)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 일간지 및 방송사는 그 외 다수가 있으나 기사 혹은 방송에서 동해 표기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선정적인 신문사는 제외하였다.

II. 영국 주요 언론사 현황

본 연구는 영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를 기준으로 한다. 영국 전역을 서비스 하는 언론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스포츠나 오락, 해외 소식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 등은 영향력 측면에서 거의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신문사의 경우, 종이 신문과 온라인 신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신문사가 영향력 측면에서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였다.

신문의 경우, 판매 부수와 정치 성향, 온라인과 오프라인(인터넷 서비스와 종이 신문 발행), 인터넷 방문자 수² 등을 기준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영국의 일간지를 조사하였다. 판매 부수의 공신력을 위해 신문 발행 부수 조사기관인 발행부수공사기구 에이비시(ABC, Audit Bureau of Circulations)의 통계를 참고하였다. <표 1>은 영국의 주

<표 1> 영국의 주요 일간지 대한 회답

신문사명	종류	판형	창간	기타	발행 부수
더가디언(The Guardian)	일간지	베를리너	1821	중도 좌파	177,827
더선(The Sun)	일간지	타블로이드	1964		49,956
데일리메일(Daily Mail)	일간지	타블로이드	1896		1,708,006
데일리미러(Daily Mirror)	일간지	타블로이드	1903	선정성	962,670
데일리스타(Daily Star)	일간지	타블로이드	1978		476,448
데일리익스프레스(Daily Express)	일간지	타블로이드	1900		488,246
데일리그라프(The Daily Telegraph)	일간지	브로드시트	1855		511,857
런던이브닝스탠더드 (London Evening Standard)	일간지	타블로이드	1827		600,000+
레이싱포스트(Racing post)	일간지		1896	경마	56,507
더타임스(The Times)	일간지	타블로이드	1785	타임스시리즈의 원조	394,448
옵서버(The Observer)	주간지	베를리너	1791	일요일만	214,644
선데이타임스(The Sunday Times)	주간지	브로드시트	1821	일요일만	839,077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일간지	컴팩트	1986	진보	104,488

2 동해 표기는 해당 국가 독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주제라고 판단하여 종이 신문의 판매 부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문자 수도 고려하였다. 인터넷 방문자 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방문하는 규모 역시 독자층의 규모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요 신문과 신문별 판매 부수³⁾이다.

영국 신문사는 2012년 1월 기준으로 하루 10만 부 판매 부수 이상의 신문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판매 부수를 2015년 순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중에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정론지로서 오랜 전통과 영향력,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더타임스(The Times), 더가디언(The Guardian), 인디펜던트(Independent)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영국의 방송 시장은 비비시, 아이디브이, 채널 4(Channel 4), 채널 5(Channel 5)를 포함한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영국 지역 시청률을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 외 상업 방송사인 스카이(Sky)도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BBC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는 영국의 주요 방송사 현황이다.

<표 2> 영국의 주요 방송사

방송사명	형태	소유주	개국	기타
비비시(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국영	영국	1922	다큐멘터리
인디펜던트(Independent Television, ITV)	민영	ITV Media	1955	합리화
스카이(Sky)	민영	Skypc	1990	
채널 4(Channel 4)	준공영	Channel 4 Television Corporation	1982	1980년 영국 방송법
채널 5(Channel 5)	민영	Viacom Inc	1997	ITN 위탁 제작

III. 영국 주요 언론사 보도 현황

이 글에서 기사 분석 시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부터 본 논문의 연구 기간인 2015년 12월까지로 한정하였다. 각 언론사마다 인터넷에서 기사와 뉴스를 공개하는 연도가 각각 다르다.

<표 3>은 영국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내에서 일본해(Sea of Japan, Japan Sea) 혹은 동해(East Sea)가 언급된 기사를 검색하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사에서는 기사 내에서 여러 번 일본해 혹은 동해가 언급되었더라도 한 건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언론사마다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연도가 다른 상황에서 가장 검색이 빠른 시기부터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는 조사 대상 영국 언론사 기사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기(병기 및 단독 표기 포함) 횟수를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본해 표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에 따라 동해 표기 및 병기 빈도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영국 BBC는 일본해 표기보다 동해 표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5〉는 위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나타난 표기 현황 빈도를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기 현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최근으로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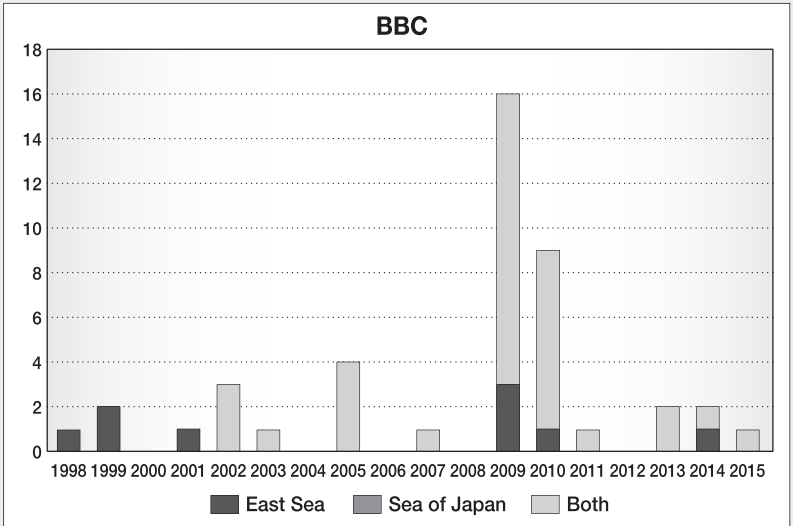
〈표 3〉 조사 대상 영국 주요 언론사의 기사 내 일본해와 동해 표기 수*

언론사	기사 수	비고	검색 기간
더타임스	52	신문사(영국)	2010~2015
더가디언	65	신문사(영국)	2010~2015
인디펜던트	97	신문사(영국)	1992~2015
비비시	44	방송사(영국)	1998~2015
아이티브이	5	방송사(영국)	2013~2015
데일리그래프	110	신문사(영국)	2000~2015
전체 기사 수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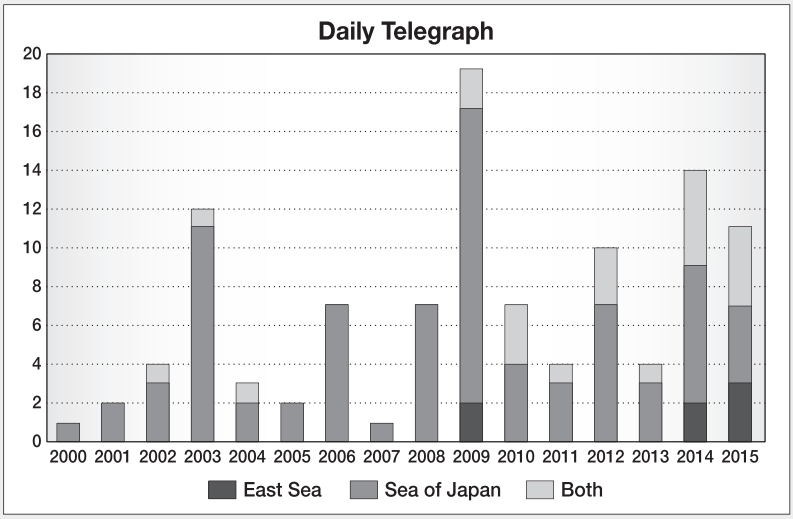
* 기사 내에서 일본해 혹은 동해가 언급된 기사 수이다. 기사 내에서 두 지명 혹은 한 지명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기사 한 건으로 채택하였다.

〈표 4〉 조사 대상 영국 언론사 동해와 일본해 표기(병기 및 단독 표기) 횟수

언론사	전체	동해	일본해	병기
더타임스	52	0	50	2
더가디언	65	6	47	12
인디펜던트	97	2	93	2
데일리그래프	110	7	81	22
비비시	44	9	0	35
아이티브이	5	1	4	0
전체 기사 수	373	25	27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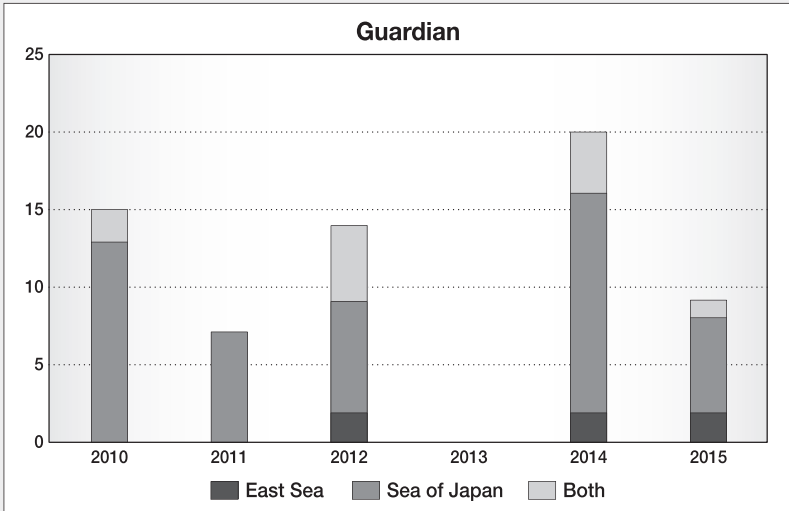


〈그림 1〉 비비시 연도별 기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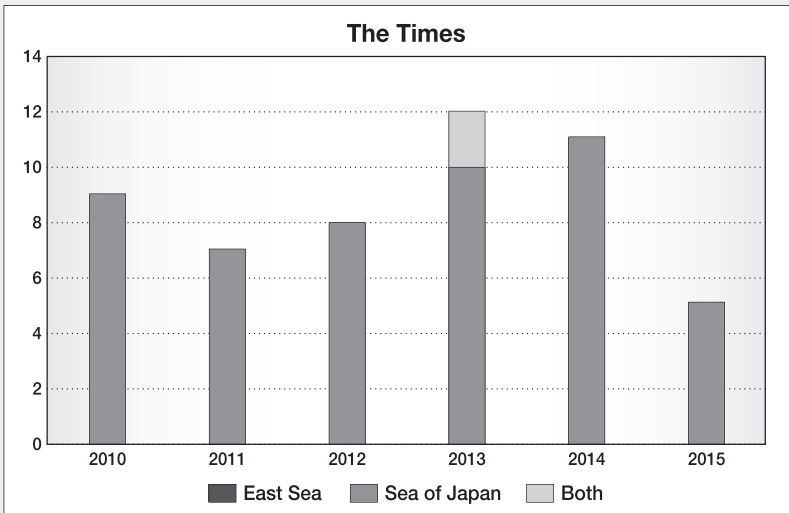


〈그림 2〉 데일리텔레그래프 연도별 기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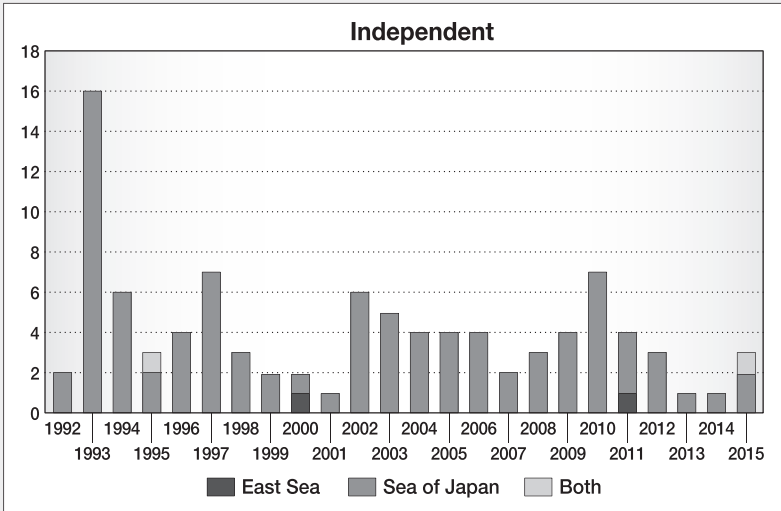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그림 3〉 더가디언 연도별 기사 분포



〈그림 4〉 더타임스 연도별 기사 분포



〈그림 5〉 인디펜던트 연도별 기사 분포

수록 동해 표기 및 병기 경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비비시 방송사는 일본해 단독 표기보다 동해 병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5〉는 조사 대상 영국의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동해와 일본해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나타낸 표이다. 주제는 크게 정치, 군사, 교육, 환경, 문화, 기타로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 주제 유형은 기사 내용을 분석하면서 연구자가 정한 자의적 분류이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기사는 기타와 정치, 군사 부문이다. 군사는 주로 북한의 대치, 북한의 미사일

〈표 5〉 조사 대상 영국 언론사 동해와 일본해 기사의 주제별 분류

언론사	정치	군사	교육	환경	문화	기타	합계
더타임스	9	20	0	3	0	20	52
더가디언	9	13	0	3	2	38	65
인디펜던트	11	14	0	12	3	57	97
데일리그래프	15	60	0	4	0	31	110
비비시	23	17	0	4	0	0	44
아이티브이	2	2	0	0	0	1	5
전체 기사 수	69	126	0	26	5	147	373

발사, 핵실험 등의 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정치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북한 핵 관련한 한국과 미국, 주변국들과의 대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 환경은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 깊은 기사가 많았다. 관광 및 책자 발간 등은 문화 기사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 기타는 경제, 사건·사고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기타 주제에는 1983년 9월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6〉은 동해가 표기된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과 군사 분야가 전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 분야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남북한 군사 대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가 동해이기 때문에 기사에서 동해 표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 대응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도 동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해 표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분야의 대부분은 버지니아 교과서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한국과 일본의 바다 이름에 대한 지명 갈등의 사례,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서의 동해/일본해 표기, 한국과 일본의 영해 관련 갈등 등을 모두 교육 주제로 분류하였다. 교육 분야의 빈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미국 버지니아주 교과서에서 동해 지명의 병기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차원의 교육에 국한된 이슈임에도 영국의 더가디언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경향이 강한 영국의 더타임스는

〈표 6〉 동해 표기 기사의 주제별 분류

언론사	정치	군사	교육	문화	환경	기타	계
더타임스	1	2					3
더가디언	1	2	6	6	2	1	18
인디펜던트				1			1
비비시	3	3	1		1		7
전체 기사 수	7	18	19	9	3	1	58

영국 내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는 분위기도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더가디언이 동해 표기 및 병기에 대해 많은 기사 내 표기 빈도를 보인 것은 이 신문이 영국에서 중도좌파 진보 성향의 대표적 일간지인 동시에 인터넷 방문자 수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이는 점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일본의 지명 갈등에서 기존의 일본 주장에 반하여 한국의 주장과 상황을 전달하려는 점과 함께 전 세계 인터넷 독자층을 감안하여 지명과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석된다.

IV. 신문 기사와 방송에 나온 지도의 동해 표기 현황

다음은 영국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다루었던 기사와 뉴스 속의 지도에서 나온 동해 표기 내용이다. 지도가 실린 기사 연도와 해당 월을 보면 지도가 실린 기사는 2000년 이후 기사가 대부분이다. 앞의 <표 4>와 <표 5>의 빈도와 달리 지도가 나온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지도에 나온 동해 표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지도에서 표기가 없는 공백인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일본해만 표기된 단독 표기, 세 번째 유형은 동해 병기 유형이다. 또한 뉴욕타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사가 동해 병기 혹은 공백인 지도를 싣고 있다. 이 의미는 우리나라의 동해 표기 혹은 동해 병기의 노력이 언론사의 기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지도가 실린 기사의 비율이 신문 기사에 비해서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일본해 표기 대신 공백이나 동해 병기인 지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동해 표기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은 영국 더가디언의 동해 표기 관련 기사 목록 및 주요 내용이다. 더가디언 신문사는 2014년 4월부터 'North Korea network'라는 신설 섹션을 인터넷 가디언지에 개설하였다. 이후 다른 영국 디지털 일간지와 달리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 일반 보도뿐만 아니라 심층 보도 및 특별 보도를 많이 실고 있다. 동해 표기의 경우, 다른 일간지와 방송사에 비해서 동해 단독 표기를 게재한 기사 빈도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많은 동시에 북한 네티

〈표 7〉 더가디언의 동해 표기 관련 기사 목록

번호	기사 게재일	제목	주요 내용
1	2010-08-18	Rocky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ver disputed islands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간 갈등
2	2010-08-18	Islands disputed by South Korea and Japan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간 갈등
3	2012-04-13	How wildlife is thriving in the Korean peninsula's demilitarised zone	DMZ의 생태계 (동해 단독 표기)
4	2012-08-10	South Korea and Japan face off over disputed islands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5	2012-08-10	Japan comes to terms with Olympic women's football defeat	일본 올림픽 여자 축구팀의 패배
6	2012-09-05	Japan stokes tensions with China over plan to buy disputed islands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의 중일 간 갈등
7	2012-09-26	Japanese nationalist tipped to be PM, raising fears of tensions with China	영토분쟁과 관련한 중일 간의 갈등
8	2012-12-03	The first trophy of Rafa Benítez's reign at Chelsea	스포츠 (동해 단독 표기)
9	2014-01-28	Japan: teachers to call Senkaku and Takeshima islands Japanese territory	일본의 영토에 대한 교육내용 개정 (동해 단독 표기)
10	2014-05-15	A day in the life of a dolphin trainer at North Korea's Pyongyang dolphin-arium	북한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돌고래 조련사의 인생 (동해 단독 표기)
11	2014-06-02	Rabbit Island: a Japanese holiday resort for bunnies	일본여행가이드
12	2014-07-07	Photo highlights of the day	오늘의 사진 (동해 단독 표기)
13	2014-07-13	North Korea fires missiles into sea in apparent anger over military drill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동해 단독 표기)
14	2014-08-29	North Korea fires missiles into sea in apparent anger over military drill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동해 단독 표기)
15	2015-02-16	North Korea's Kim dynasty: the making of a personality cult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스토리
16	2015-07-15	North Koreans turn to squid to compensate for drought	가뭄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생활 변화 (동해 단독 표기)
17	2015-07-30	North Koreans turn to squid soup to ward off Mers virus	메르스 예방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민간요법 안내 (동해 단독 표기)

워크 섹션 개설 이후 동해 표기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 8〉은 비비시 방송사의 방송 기사 중에서 동해 표기가 언급된 횟수이다. 동해(East Sea)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1988년으로 이후 총 44회에 걸쳐 동해가 언급되었다. 주로 2000년 이후 언급 횟수가 많고 2010년 이후 횟수는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 8〉 비비시 방송사의 동해 표기 관련 기사 목록

번호	기사 게재일	제목	주요 내용
1	1998-06-27	North Korea blames South for sub deaths	북한 잠수함 선원(군인)의 죽음에 따른 항의 (동해 단독 표기)
2	1999-07-19	Stormy waters for nuclear shipments	북핵 문제 (동해 단독 표기)
3	1999-07-20	China's military might	중국의 군 현황(동해 단독 표기)
4	2001-09-18	Joint statement in detail	남북한 회담(동해 단독 표기)
5	2002-07-29	Spy' crash site found in China	스파이 검거
6	2002-07-08	Search for 'spy' pilots in China	스파이 검거
7	2002-08-16	Koreas unite against Japan	남·북한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8	2003-03-03	N Korea jets shadows US plane	북한의 미국 항공기 운항 방해에 따른 항의
9	2005-03-01	S Korea calls for Japan apology	한일관계 개선 및 영토분쟁
10	2005-03-16	S Korea protest over Japan claim	한일 간 영토분쟁
11	2005-03-03	N Korea makes missile test threat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위협
12	2005-05-06	Japan threatens N Korea with UN	북핵에 대한 일본과 UN의 경고
13	2007-01-08	S Korea bid to solve sea dispute	한일 간의 영토분쟁
14	2009-01-12	Economy tops Seoul summit agenda	한일 정상 간의 만남 (동해 단독 표기)
15	2009-03-12	N Korea sets rocket launch date	북한의 미사일 배치
16	2009-03-17	China concerned by Korea tensions	한반도 긴장감 고조에 따른 중국의 우려
17	2009-03-24	N Korea warns over rocket launch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18	2009-03-26	N Korea 'place missile on pad'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19	2009-03-03	China talks for US N Korea envoy	북핵미사일에 관한 미중 간의 대화
20	2009-03-05	N Korea threatens civilian planes	북한의 한국 민항기 위협
21	2009-03-09	N Korea warning over 'satelite'	북한 영공 내 인공위성에 대한 위협

영국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해 명칭 표기 분석

22	2009-04-04	N Korea skips first launch chance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3	2009-04-05	North Korea space launch 'fails'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24	2009-06-22	Watching whalers and whales in Madeira	마데이라에서의 고래잡이와 고래
25	2009-07-02	North Korea 'test fires missiles'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동해 단독 표기)
26	2009-07-04	Calm urged after N Korea missiles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동해 단독 표기)
27	2009-07-04	North Korea missile test defy UN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UN의 반대 입장
28	2009-07-07	UN condemns North Korean missiles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UN의 비난
29	2009-08-01	N Korea accuses fishing boat crew	대한민국 어선의 영해 침범에 따른 북한의 비난
30	2010-02-19	N Korea declares sea firing zones	북한의 해양 경계 선언
31	2010-07-19	US and South Korea to hold major military exercise	한미 연합훈련 개시
32	2010-07-21	Clinton and Gates visit Korean Demilitarized Zone	클린턴, 게이츠의 한국 DMZ 방문
33	2010-07-21	US announces ne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한미 연합훈련 개시
34	2010-07-26	Press says US-South Korea drill sends wrong signal	한미 연합훈련 개시 (동해 단독 표기)
35	2010-08-19	North Korea says seized South Korean vessel 'intruded'	대한민국 어선의 영해 침범에 따른 북한의 어선 억류
36	2010-08-08	North Korea 'detains fishing boat from South'	북한의 대한민국 어선 억류
37	2010-08-09	North Korea 'fires artillery into Yellow Sea'	북한의 포사격에 따른 서해 어업 중지
38	2010-09-02	Typhoon Kompasu hits South Korea capital Seoul	태풍 콤파스의 서울 강타
39	2011-09-04	Typhoon Talas kills at least 19 people in Japan	태풍 탈라스로 인한 일본의 인명 피해
40	2013-04-02	Timeline: North Korea nuclear stand-off	북핵의 스토리
41	2013-09-19	USA: Tokyo wades into row over lessons on disputed waters	한일 간의 영토분쟁
42	2014-02-07	S Korea and Japan clash over sea's name in virginia textbooks	한일 간의 영토분쟁, 버지니아주의 교과서
43	2014-05-31	BBC Nature-Dolphins try to save dying companion	(동해 단독 표기)
44	2015-04-28	Bad blood between Japan and Korea persists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

앞의 그림과 표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듯이 동해 표기 및 병기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언론사는 비비시 방송사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해 단독 표기 혹은 동해 표기에 소극적인 언론사로는 더타임스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의 표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와 기사 내 지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연구는 언론사 내부의 보도 지침과 기사 작성에 관여한 기자 및 방송 관계자와의 면담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영국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영국의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현황을 분석하고 표기 명칭의 의사 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일차적으로 영국 주요 언론사의 기사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현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주요 언론사의 동해와 일본해 표기는 여전히 일본해 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주요 지도제작사의 동해 병기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 교과서 내 동해 표기 빈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 달리, 영국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는 여전히 일본해 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동해 표기 관련하여 영국 언론의 특성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정치적 사안에 대한 기사와 동해 표기 빈도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예: 남북관계)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해 함대의 군사 훈련 등에서 '동해'가 단독 혹은 병기로 명확하게 표기되고 있다.

세 번째로, 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혹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 대치 상황

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동해 지명이 언급되었다면, 드물게는 버지니아주 교과서 병기 법안은 동해 표기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로, 동해 관련 기사나 뉴스에서 지도가 해당 기사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몇몇 언론사에서 제한적으로 한국과 일본 해역의 지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해 표기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동해가 여전히 기사에서 장소 혹은 위치를 알려주는 간접적인 위치 정보에 제한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동해 단독 표기와 동해 병기 표기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있다. 단독 표기의 경우, 주로 버지니아 교과서의 병기 법안 과정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 해군의 ‘동해함대’ 같은 고유 명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단독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이 기사 내의 동해 표기에 대한 표기 자체의 분석 결과라면,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동해 표기 상황의 분석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기사 내용이 동해와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우리나라 해역 혹은 일본 해역의 내용임에도 동해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기사 내용이 일본과 거의 관련이 없음에도 바다 이름에 일본해가 표기되거나 혹은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되고 있는 기사들도 확인되었다. 반대로 기사 내용이 우리나라의 국내 이슈임에도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병기되고 있는 기사도 다수 발견되었다.

향후 연구 방향 및 내용으로 무엇보다 언론사 담당자와의 면담이나 접촉을 통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연구자 차원에서는 언론사 기자와의 면담이 가능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언론사와의 관계 정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자 면담이나 접촉을 통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동해 표기와 기사 내 문맥 간의 관련성의 연구가 필요하다. 동해 단독 표기와 병기, 부적절한 표기(국내 이슈임에도 병기 혹은 다른 표기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탐사 보도, 기획 보도일 경우 일반 기사와 동해 표기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 혹은 동해 표기가 단순한 텍스트 의미에 국한되어 있는지 등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영국 주요 언론사의 입장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영국 언론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문초록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에 대한 표기 문제는 공식 문서를 통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 논리 및 근거와 함께 동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영국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사와 기사 내 지도에서 나타난 동해 표기 현황을 분석하는 데 주요 연구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동해 단독 혹은 병기 표기는 최근 이슈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해함대의 군사훈련 등에서 '동해'가 단독 혹은 병기가 명확하게 표기되고 있다. 둘째,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동해 관련 기사나 뉴스를 다룰 때 지도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몇몇 방송사에서 제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해역의 지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해 표기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기사에서 동해 표기의 단독 표기와 병기 표기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해 표기 기사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함께 기자의 지위와 성향이 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해, 영국 언론, 언론 기사, 지명, 지명 표기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urrent Naming Trend of the “East Sea” in Commonwealth Media Sources

Kim, Younghy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ong, JungEun

(University of West Georgia)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and frequency of the use of the name “East Sea” in newspapers and broadcasts in the United Kingdom.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the name “East Sea”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and topic of each newspaper article and broadcast, which includes politics, military, diplomacy, culture and physical environment. “East Sea” often appears in articles regarding military, politics, diplomacy,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 Korea, and the North’s nuclear weapons, military operations and missile launches. There are few articles that include a map referring to the geographical name, “East Sea.” Several mass media outlets have exceptionally presented maps of Korean and Japanese seas, but very little number articles provide a map with the notation of the “East Sea.” Finally,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would be able to use this paper as a basic material to actively monitor and correct the usage of the “East Sea” in foreign media.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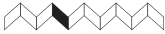
East Sea, United Kingdom’s media, media articles, geographical names, designation of geographical names

참고문헌

- 김덕주, 1999, 「동해 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 6권 2호.
- 김순배, 2011, 「명명 유연성에 따른 지명 유형과 문화정치적 의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권 3호.
- 김순배·김영훈·이상균, 2015, 「지명 표기에서 병기 논리의 접근과 시각: 동해 지명 병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5권 1호.
- 김신, 2011, 「동해 경계와 표기 과정 재조명」, 『인터넷 비즈니스연구』 12권 1호.
- 김영훈·이상균·홍정은, 2018, 「외국 언론매체의 동해 인식과 동해 명칭 표기 현황: 캐나다, 호주, 인도, 싱가포르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권 3호.
- 김호동, 2011,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2권.
- 박찬호, 2012, 「동해 표기의 국제법적 고찰: UNCSCGN 과 IHO 결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3권 3호.
- 상선희, 2011, 「지도에 나타난 해역 명칭에 대한 이해와 분쟁 사례 연구」, 『영토해양연구』 2권.
-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권 4호.
- 심정보, 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지도학회지』 7권 2호.
- 심정보, 2013, 「근대 일본과 한국의 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5권 2호.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16권 1호.
- 임은진·이상균, 2016, 「불어권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명칭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권 4호.
-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72권.
- 이기석, 2008, 「‘동해’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통용을 위한 방책」,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 이상균·김영훈, 2015, 「프랑스 민간 부문 대상 동해 표기 현황 및 동향 분석」

- 민간 지도제작사, 방송사, 신문사를 대상으로, 『영토해양연구』 10권.
-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권 1호.
- 이승수·오일환, 2010, 「조선시대의 동해에 대한 지리인식과 문학적 형상」,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권 5호.
- 이영희, 2010, 「지명을 통한 장소정체성 재현과 지명영역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권 2호.
-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 지명」, 『지리학』 27권 3호.
- 정인철, 201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조사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0권 2호.
- 주성재, 2007, 「동해 명칭 복원을 위한 최근 논의의 진전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지도학회지』 7권 1호.
- 주성재, 2009, 「토착지명, 지리적 실체, 그리고 인식의 문제: 동해/일본해 표기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권 5호.
- 주성재, 2010,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표기 문제」, 『한국지도학회지』 10권 2호.
-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 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권 6호.
- 최종남·심정보·윤옥경, 2011, 「영미권 지도 및 지리 교재 제작사의 지명 표기 원칙에 따른 동해 해역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11권 2호.
- 최진용·권영락, 2006, 「동해 해저 지형의 명명」, 『대한지리학회』 41권 5호.
-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 명칭」, 『지리학』 27(3).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독도연구소의 『영토해양연구』를 중심으로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를 선도하며, 연구 성과 축적을 촉진하고 연구자 양성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독도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의 결과 독도 관련 연구는 방대한 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독도’를 주제로 연구 논저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단일 연구 주제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독도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다행히 독도 관련 연구 동향과 성과를 점검한 선행 연구들이 있어 그간의 독도 연구의 동향과 흐름,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 논문 투고일: 2018. 10. 10, 심사 완료일: 2018. 11. 7, 재심사 완료일: 2018. 11. 16, 게재 확정일: 2018. 11. 19.

있다.¹

독도 연구 경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또한 문제점이 여전히 독도 연구에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선행 연구들은 해방 이후 독도 연구의 최대 성과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학, 국제법, 지리학, 국제정치, 역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역사학과 국제법 분야에서 나온 독도 연구 성과를 당시 한국의 학술적 역량을 보여준 우수한 성과로 손꼽았다. 그리고 이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와 지원의 결과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외교 각서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학계는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국제법과 사례를 점검하여 성과를 보완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 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성과와 더불어 독도 연구 경향의 문제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수백 편의 독도 연구 성과가 있지만, 한일 간 쟁점을 제대로 규명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연구의 양적 팽창이 질적 제고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대표적인 학제 간 연구 성과로는 1978년 한국사학회가 발간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와 이후 연구진을 보장하고 내용을 확충하여 1985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명의

1 김병렬·노영구·이상근, 2009,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환, 2014,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9; 문철영, 2016,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제 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21;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 40; 유미림, 2006, 「독도 자료집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서장 참조; 이성환, 2011,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0년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 김수희, 2013, 「독도 연구의 실증적 연구방법과 그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5; 오일환·이연식, 2015,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학술논문에 관한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0; 김병렬, 2016,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 제언」, 『영토해양연구』 11.

2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독도』, 1965, 대한공론사; 한국외무부, 1977, 『독도관계자료집 II』; 한국사학회, 1978,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독도연구』.

로 재발간된 『독도연구』를 꼽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학제 간 연구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의 공동 연구라기보다 개인의 연구논문을 모아놓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³ 또한 한국에서의 독도 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형태가 주류이며, 일본 자료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결론 없는 논쟁만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독도 연구가 당위론적 결론으로 출발하여 직간접적인 영유권 강화로 귀결되는,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대동소이한 목적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⁴ 그리고 독도 연구의 폭발적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196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연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도 동일하다고 한다.⁵

다음으로 독도 연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사료 활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사료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면밀한 사료 검토를 통한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사료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면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된다.⁶ 한국과 일본의 연구 풍토 중 각각 자국에 유리한 사료만 공개 활용하고, 그마저도 취사선택의 편의성과 자의성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연구자들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연구 태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만 인용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⁷ 연구 성과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태도가 학제 간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일 수

3 김병렬·노영구·이상근, 2009, 앞의 책, 192쪽.

4 이성환, 2011, 위의 글, 252~253쪽.

5 이성환, 2014, 위의 글, 309쪽.

6 유미림, 2006, 위의 글, 321~322쪽.

7 오일환·이연식, 2015, 위의 글, 7쪽.

독도 연구의 동향과 성과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인식과 태도는 선행 연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고 동일한 내용의 연구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이 독도 연구 경향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일찍이 제시된 셈이다. 독도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첫째, 역사학과 국제법을 포함한 공동 연구, 즉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사료 발굴의 중요성과 사료에 근거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독도연구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6월 현재 독도 관련 학술논문을 10개 이상 발표한 기관은 13곳인데, 그중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에 수록된 논문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논문이 약 6%를 차지한다고 한다.⁸ 이 중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성과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적이 있다.⁹ 이 논문은 독도연구소가 2011년 창간한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독도 관련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 독도연구소의 간행물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 목표와 지향점을 알아보고, 둘째, 독도연구소가 독도 관련 현안과 쟁점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대응 방안을 간접적으로나 파악할 수 있고, 셋째, ‘독도연구소’로서 의제 설정과 선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영토해양연구』 수록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관련 연구 성과를 같이 검토하였다.

⁸ 오일환·이연식, 2015, 앞의 글, 11쪽.

⁹ 문철영, 2016, 위의 글 참조.

II.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기대효과: 『영토해양연구』의 ‘특집’

1. 독도 연구의 기획과 체계적 성과 확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2011년 ‘영토와 해양을 둘러싼 갈등과 해 소의 사례를 연구, 조사, 소개하는 공론의 장(場)을 국내외의 관련 학계에 제 공하기 위해’ 『영토해양연구』를 창간하였다. 『영토해양연구』는 전문학술지 를 표방하며 연 2회씩 발간되어 2018년 현재 총 15호를 발간하였으며, 총 130여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학술지의 목적이 독도를 포함한 영토와 해 양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큰 틀에서 수록 논문 전체가 독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독도를 직접 다루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문을 추출해보면, 전체 수록 논문의 약 60%를 차지한다.

『영토해양연구』에는 특집, 특별기고, 연구논문, 사료해제, 서평 등 다양한 형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연구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논 문에서는 특집, 기고, 연구논문, 사료해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연구논문 의 경우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주제와 사료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특집논 문과 사료해제 분석에서 같이 검토하였다.

『영토해양연구』의 ‘특집’은 창간호부터 8호까지만 기획논문이 게재되고

〈표 1〉 『영토해양연구』 수록 ‘특집’

번호	주제명	연도	호수	논문 편수	비고
1	한일관계와 독도	2011	1	5	
2	동해 지명 표기	2011	2	4	
3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과거·현재·미래	2012	3	4	3호에 특집 주제 2개 수록
4	한·일 교과서와 독도	2012	3	3	
5	국제법과 해양경계	2012	4	3	
6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2013	5	4	
7	1905년 국제사회와 독도	2013	6	2	7호 특집 없음
8	이어도 특집	2014	8	2	좌담회 개최 9호부터 특집 없음

중단되었다. 편집자의 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특집 주제는 대체로 독도에 집중되어 있다. 특집 주제는 시의성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선정되었을 것이므로 그 결과도 이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즉, ‘특집’의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의식의 확장, 공동 연구 목표와 분담된 연구 내용의 조화를 통한 연구의 진전일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특집에 수록된 논문들의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 보면 시의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공동 연구로서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해당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이 모아져 있을 뿐이다. ‘특집’으로서 일반적인 시의성과 필요성 이외에 뚜렷한 기획 의도와 목표가 제시된 경우도 드물다. ‘특집’의 기획력 부족과 더불어 9호부터 ‘특집’이 없어진 것은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가 독도 연구에서 수행해야 할 의제 설정과 선도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특집’ 기획은 독도 연구에서 기획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성과 공유 체계를 통해 연구를 확산·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표 1〉을 보면 특집 주제는 독도연구소가 기획해볼 만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번과 3번은 연구과제 결과물의 일부를 수록한 것이고, 4번과 6번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 카이로선언 70주년을 기념한 시의성 있는 기획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집마다 총론에 해당하는 글이 없어 특집 기획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먼저 특집 ‘한일관계와 독도’는 독도연구소의 임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도 자료 정리와 해제, 자료집과 연구총서 발간, 관련 연구 촉진이라는 이상적인 연구 체계와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특집은 독도연구소의 연구 지원 결과물인 총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¹⁰ 독도연구소는

10 이형식, 2011, 「패전 후 일본학계의 독도문제 대응(1945~1954): 국제법학계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 분석: 고유영토 다케시마(독도) 영유 의사의 검증」; 전상숙, 2011, 「한국 식민지시기 전후의 연속성 속에서 본 한·일 독도문제의 역사성과 정치적 함의」; 정미애, 2011, 「한일회담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치적 함의」; 조운수, 2011, 「한국 교섭 참석자의 일본 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영토해양연구』 1.

2008년 일본의 한일회담 외교문서 약 6만 5천 장이 공개되자 이를 정리·해제하는 연구 사업을 기획·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 공개 외교문서 원문 전량을 출판하고, 이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선별하여 6권의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 지원 사업의 결과물은 재단의 연구총서로 간행되었다.¹¹ 이 특집은 이 같은 연구 사업의 과정에서 나온 연구논문을 특집으로 게재하였다. 특집을 통해 일본 정부와 학계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고, 한일 간 독도 문제가 지닌 역사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집으로서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개별 논문들의 성과와 무관하게 ‘특집’으로서 문제의식의 동질성, 개별 연구 주제 간 연계성, 일본 외교문서라는 공통적인 자료 활용성 부족 등 공동 연구의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독도연구소의 연구 지원은 한일 외교문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학계에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 결과 특집 논문들 외에도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촉진시켜 연이어 『영토해양연구』에 연구와 사료해제가 수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운수는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일회담 전개 과정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입장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한일 양국은 최종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으로 독도 문제를 양국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하였고,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철저한 중립을 택했다고 평가한다.¹² 이 연구에서는 미국 공문서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를 소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인 듯하다. 미국 공문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에 앞서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정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한일 간 현안 문제였고,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 등 한일회담

11 이원덕·전상숙 등, 2013,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12 조운수, 2012, 「한일회담과 독도: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4.

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따라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검토할 때 독도 문제만을 떼어서 검토하는 것은 이 시기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정책과 대응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일찍부터 정치학 분야의 선도로 한일문제는 한미일 3국 관계 속에서 조망되고 있다.

특집 3번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에서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과 남사군도의 분쟁을 다루었다.¹³ 이 특집은 기획의 경위와 의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독도연구소는 2011년 3년간의 중기 기획연구과제로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 연구를 통해 일본의 영토정책을 밝히고, 독도 도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⁴ 이 특집은 2010년 9월 중일 간 영토분쟁이 발발함에 따라 시의성 있게 기획되어 일본과 영토 분쟁중인 러시아, 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남사군도를 둘러싼 분쟁까지를 검토하였다. 각 논문의 문제의식과 구성체제는 다르지만 해당 영토분쟁의 역사적 연원과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냉전 체제 해체 후 지역 내 영토분쟁이 심각한 갈등 요소가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도 이 같은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조망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특히 동아시아 영토분쟁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수로 지역 내 갈등과 견제뿐 아니라 미·중 간 세계 질서 속에서의 갈등과 견제 구도까지 중첩됨으로써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획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은 독도연구소 명의의 기획연구 저서로도 발간되었다.¹⁵

13 하도형, 2012, 「2010년 중·일 다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대응」; 김인성, 2012, 「러시아 쿠릴열도 정책의 변화와 함의: 2009년 이후를 중심으로」; 이명찬, 2012,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김동욱, 2012,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 방안」, 『영토해양연구』 3.

14 이명찬, 2012, 위의 글, 53쪽.

15 고훈준, 이명찬, 하도형 외, 201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이처럼 두 개의 특집은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획이었고, 독도 연구 체계의 전형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특집이다. 또한 독도연구소의 선도 기능도 잘 보여준 사례이다. 우선 두 개의 특집은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기획이었다. 두 개의 특집은 시의성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자료 공개, 일본의 영토분쟁 촉발이라는 조건에서 발 빠르게 기획한 주제이다. 특히 한일관계 특집은 일본의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대량으로 공개되자 독도연구소가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전까지 한일회담 관련 연구가 지체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의 대량 공개는 연구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한일관계와 독도 문제를 시급한 연구과제로 제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연구소가 자료 공개와 동시에 자료 정리와 연구 촉진을 연구과제로 설정한 것은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획이었다.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과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대한 특집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였다. 다음으로 두 개의 기획 특집은 독도 연구 체계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이다. 연구과제 기간을 다년으로 설정하여 질적 성과를 보장해주었고, 연구결과물을 자료집과 연구서로 간행해 학계에 제공하였으며, 중간 성과를 특집 연구논문으로 게재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다년의 연구 기간을 통해 참여 연구자들은 문제의 식과 연구과정을 공유하고, 자료 정리와 활용과정도 공유함으로써 학제간 공동 연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독도 연구에 필요한 과제이며 독도연구소와 같은 전문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 독도 연구의 시의성과 연구의 심화

특집 주제 4번 ‘한·일교과서와 독도’는 『영토해양연구』 3호에 수록된 것

으로,¹⁶ 3호에는 두 개의 특집이 수록되어 있다. 이 주제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독도연구소가 기획·연구해온 주제로 주기성을 갖는 연구주제이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은 이 특집 외에도 『영토해양연구』에 여러 편의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¹⁷ 한국과 일본은 교과서를 매개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교과서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따라 사용되는 주요 교재로 학계의 통설에 따른 정수(精髓)만을 추출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한일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기술 현황과 내용, 특징,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독도연구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최근 한일 양국의 역사 교과서와 지리 교과서에 수록된 독도 기술 현황과 독도 교육, 영토 교육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 논문은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수록 내용과 수준을 정해서 독도 교육과 영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계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연구 성과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독도 교재 보급과 교육, 다양한 체험학습, 한일 간 교사와 학생 교류 등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 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 같다.

한 사례로 초등학교의 독도 교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독도 교육은 주로 교사의 연구 경험으로 형성되고 주도되고 있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가 주도 정책으로 의무화된 독도 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일부 관심 있는 교사에 의해서만 독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고, 학생들 다수도 독도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16 김영수, 2012,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심으로」; 남상구, 2012, 「전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한철호, 2012, 「한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서술 경향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3.

17 남상구, 2011,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1; 허은실·남상준, 2013,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영토해양연구』 5; 서종진, 2014, 「아베 정부의 영토교육 강화와 검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영토해양연구』 8; 홍성근, 2017,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4.

않고 있었다.¹⁸ 이 연구는 일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에 기초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결론을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독도 문제와 독도 교육에 갖는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대한 우려는 독도 연구자와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교육 현장에서 한일 간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민족주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왜곡된 민족주의가 영토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약화가 영토분쟁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응답자 67~68%가 이 같은 해결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영토분쟁은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지역 통합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럼에도 지역 통합에 대한 지향성은 지역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영토분쟁과 결합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망된다. 지역 내 세력 균형과 분쟁 관련국들 사이의 공통 동맹국의 존재가 분쟁의 폭발성을 조절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도가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제어하고, 민족주의적 선동과 무력 동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강조된다.²⁰ 이 같은 점은 독도 교육에서도 귀기울여야 할 내용이다. 독도 문제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을 전제로 애국주의적 정서에만 기대기보다는 역사적 연원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인식,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토대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도연구소도 초·중·고용 독도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18 김소용·남상준, 2015, 「영토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독도교육을 사례로」, 『초등교과교육연구』 21.

19 이성환, 2013,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대학생의 의식조사」, 『영토해양연구』 6.

20 최운도·배진수, 2015, 「민족주의와 영토분쟁」, 『영토해양연구』 10.

독도 교육, 영토 교육에 대한 목적과 방법론에 대해 성찰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한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검토한 연구논문들이 기술 현황과 변화만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쉽다. 독도 교육도 한국의 교육 목표와 과정 속에서 조율되고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도 교육의 성과와 과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점검되고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카이로선언 7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독도연구소는 특집으로 『영토해양연구』에 총 세 편의 논문을 기획·수록하였다.²¹ 한국 학계는 전후 한일관계와 독도 문제에서 카이로선언이 가지는 중요성을 오랫동안 주목해왔다. 따라서 카이로선언 70년을 기념하는 특집은 중요한 기획연구 주제이다. 이석우는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문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제가 하나의 법적인 구도로 통합되어 연합국과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서가 되었고, 대일평화조약에 제 원칙들이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의 최종적 결론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 당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해야 하고, 일본은 연합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시적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최영호는 카이로선언에 한반도 독립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 장제스가 한반도 독립 문제를 강조하고, 이에 영국과 소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4개국 모두 조선인 독립운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은 조선인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앞의 두 논문이 한국 문제를 분석했다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카이로회담과 카이로선언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반응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카이로선언 자체에 대

21 이석우, 2013,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최영호, 2013,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2013,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영토문제」, 『영토해양연구』 5.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며, 카이로선언을 소련에 대한 일본의 북방 4개 섬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연합국과의 대일강화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소련 영토로 편입하는 것에 반대했는데, 카이로선언이 일본의 영토를 부당하게 재획정하는 근거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일본에서 카이로선언에 대한 평가는 오랫동안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한 난폭한 항복 권고로 여겨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표출된 것이 제3차 한일회담에서 나온 구보타(久保田貫一郎)의 망언이라고 지적하였다. 1953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측 대표 구보타는 “카이로선언은 전쟁중 흥분 상태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망언을 해 한일회담이 4년 6개월여간 중단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카이로선언은 전후 동북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행위의 격퇴와 원상 복구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한국의 독립문제, 일본의 영토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카이로회담과 선언은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연구 주제이다. 이를 반영해 2013년 카이로선언 7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학술 행사와 한국과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에 반영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확인된 카이로회담과 선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뒤집고, 자료 부족과 오독에 따른 사실 왜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²² 독도연구소가 이 주제로 특집을 기획한 것은 이 같은 중요성을 반영하고, 연구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이 특집주제는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는 기획이었다. 특히 와다 하루키의 연구를 통해 일본의 카이로선언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이

2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발굴 자료 및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정병준, 2014,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 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107; 한시준, 2014,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배경한,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 224.

구보다 망언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하여 흥미로우며, 향후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특집기획을 통해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 진전을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위와 같은 두 개의 특집이 시의성에 맞춰 기획되고 연구 심화를 시도하였다면, 다음의 특집 주제는 연구의 심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영토해양연구』 4호의 특집은 ‘국제법과 해양경계’이다. 이 특집에 수록된 논문은 세 편으로 페드라브랑카 사건 판결, 평화선 문제,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²³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던 무인도로 분쟁 대상지였으나, 2008년 5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싱가포르 영토로 판결하였다. 이후 국내에서는 이 판례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관원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와 관련한 입장문 제출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스투어트 케이의 연구는 한국의 평화선 선포가 당시 국제 해양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확정된 국제 선례’에 따랐다고 한 점을 해양법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해양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평화선이 대륙붕의 법적 개념 형성을 촉진했고, 20년 후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예측케 한 경제획정에 접근한 통찰력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일부 선행 연구가 평화선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 해양법의 발전 과정에서 평화선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 문제의식의 확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평화선 문제는 역사학 분야에서 관심 주제였기 때문에 평화선이 지닌 역사성과 한일회담 과정에서 차

23 마르셀로 코헨(Marcelo Kohen), 2012, 「페드라브랑카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의 본원적 권원」; 스투어트 케이(Stuart Kaye), 「해양법의 발전에서 평화선이 지니는 의의」; 김관원, 「동중국해 대륙붕 경제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4.

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⁴ 이에 따르면 평화선 선포는 한일 간 조속한 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영해와 대륙붕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정세 출현에 대응한 결과였다. 평화선 선포 직후 미국과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공해상의 자유항행원칙을 위반한 불법적인 경계선이라고 비난했지만, 평화선 선포를 준비하며 한국이 국제 해양법의 새로운 변화 추이에 민감하게 대응했다는 점, 일본과 어업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던 호주가 평화선 관련 내용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화선 문제는 학제 간 연구로의 확장 and 협업이 기대되는 주제이다. 한국 정부가 평화선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 해양법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반영했는지, 한일관계의 역사적 측면이 평화선 선포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는 국제법과 역사학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영토해양연구』 6호의 특집은 ‘1905년 국제사회와 독도’로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박배근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할 당시 국제법상 선점의 유효한 요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19세기 전후 국제법 학자들의 저술에는 선점 대상 토지가 무주지일 것, 선점 대상 토지를 영유할 국가 의사가 존재하고 공시될 것, 선점 대상 토지에 대한 실효적 점유 또는 지배가 있을 것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독도를 이런 학설에 비추보면 핵심 문제는 1905년 시점에 독도가 무주지였는지 여부, 한국에 대한 통고 결여가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인데, 최소한 시마네현 고시으로써 독도 영유 의사가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김관원은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주장인 ‘무주지 선점론’과 ‘일본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일본 정부

24 오재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박진희, 2006, 「제1공화국 시기 ‘평화선’과 한일 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박진희, 2009,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평화선과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정치외교의 주요 쟁점과 논의』, 선인.

25 박배근, 2013,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김관원, 2013, 「1905년 독도 편입 주장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6.

의 견해와 연구 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런데 특집 주제가 지닌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춰 기획의 결과가 두 편의 논문으로만 그쳐 아쉽다. '1905년'의 시점에 독도 문제 또는 한국의 영토 문제와 관련해 등장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 영국 등 여러 나라이고, 당시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독도의 운명을 조망해보는 연구도 기획해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해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 오래전부터 견제와 대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1875년에는 러시아가 사할린을, 일본이 쿠릴열도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하였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사할린까지 차지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이 패전하자 1945년 8월 소련군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점령하고 영토로 편입했다. 이는 알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결과였다. 그리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쿠릴열도의 귀속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의 주권 포기만 명시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팽창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립은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울릉도와 거문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1885년 거문도사건은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이해가 충돌한 사건이었다.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한국 영토에 대한 침탈과 점령으로 이어진 것이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한 것도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때문이었다. 그리고 러일전쟁 강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해 한국에 대한 이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미국과 영국도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조치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한국에 대한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제국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독도 문제와 현재 분쟁중인 동아시아 영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한국 문제, 현재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뿐 아니라 서양사, 동양사를 망라한 역사학,

국제정치학, 국제법 등 관련 학문 분야 간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독도 사료 발굴과 연구: 『영토해양연구』의 ‘사료해제’와 ‘연구논문’

1. 울릉도 관련 사료 발굴과 연구

『영토해양연구』 구성 체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사료해제’이다. 독도연구소의 역할 중 하나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이고, 독도 관련 사료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영토해양연구』에는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사료해제가 꾸준히 실려 총 11편이 실려 있으며, 이중 4편을 제외한 사료 해제자가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다. 사료해제 대상이 된 사료 중 다수는 울릉도 관련 사료이다. 연구자들은 독도 연구를 위해 울릉도에 대한 연구로 대상을 확대했고 사료 발굴로까지 이어졌다.

사료해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울릉도, 독도 관련 자료들이 소개·검토되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행 연구들은 사료 발굴, 정확한 사료 해독 및 활용

〈표 2〉 『영토해양연구』 수록 사료해제

번호	필자	논문명	호수	연도
1	윤유숙	『天保雜記(천보잡기)』: 所收 울릉도(죽도) 관련 사료	1	2011
2	김영수	‘울도군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선포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행정 관할 증거	2	2011
3	유미림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 사료 발견과 그 의미	2	2011
4	이원택	일본 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3	2012
5	유미림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6	2013
6	이원택	조선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8	2014
7	정영미	일본의 독도 영유권 근거 자료 조사 · 정리의 역사적 경과와 의미	11	2016
8	정영미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	12	2016
9	정영미	독도 자료 발굴사	13	2017
10	이기석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 · 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14	2017
11	이원택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15	2018

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독도 연구에서 강조해왔다. 사료해제는 이 같은 과제에 부응하고, 사료 발굴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유숙은 19세기 일본에서 작성된 『천보잡기(天保雜記)』에 수록된 울릉도 관련 사료를 소개하였다.²⁶ 이 책은 총 56책으로 제18책에 1830년대 발생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1836년(천보7) 하마다번, 오사카, 에도 지역 거주자들이 울릉도에 건너가 일본의 도검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막부의 조사를 거쳐 ‘이국도해(異國渡海)’ 죄로 처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울릉도는 막부가 도해를 금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17세기 말 ‘울릉도 쟁계’의 한일 간 최종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 성과이며, 이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평가하였다.

2010년 울릉군은 개군(開郡) 110주년을 맞이하여 1902년 당시 울도군수였던 배계주와 심홍택의 후손을 기념 행사에 초청하였다. 이때 배계주의 후손은 『울도군절목』 소장 사실을 알리고 공개하였다. 이 사료는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후인 1902년 4월 울도군의 치안 및 행정 현황을 담고 있었다. 이 사료의 공개는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수는 『울도군절목』의 작성 배경을 설명하며 대한제국이 칙령 41호에 근거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영토의식과 주권 행사를 시행했다고 하였다.²⁷ 이 사료 공개를 계기로 당시 울도군수 배계주도 연구 대상이 되었다. 『울도군절목』은 배계주가 한양에 있을 때 내부에 건의하여 허가받은 울릉도 통치 행정 명령으로, 배계주가 두 번째로 울도군수로 임명된 1902년에 마련되었지만, 군수로 부임하지 못하고 결국 면직되었기 때문에 후일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²⁸

한편 이 사료를 검토해 공개한 유미림은 『영도해양연구』를 통해 절목의 세금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는 절목의 수세 조항

26 윤유숙, 2011, 「『天保雜記(천보잡기)』: 所收 울릉도(죽도) 관련 사료」, 『영도해양연구』 1.

27 김영수, 2011, 「『울도군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영도해양연구』 2.

28 이상태, 2016, 「울도군 초대 군수 배계주에 관한 연구」, 『영도해양연구』 11.

은 독도 강치를 포함한 울릉도의 수출품에 대한 과세 규정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한 결과를 칙령 41호에 ‘수세’ 조항으로 명기함으로써 관행이던 징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는데, 일본인들이 징세권을 준수하지 않자 절목을 통해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²⁹ 그는 연구 대상을 확장해 1905년 전후 일본의 지방세와 강치어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불법편입한 1905년 이전에는 오키 어민들의 강치어업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1906년 3월어야 과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이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 내세우는 국유지 사용료도 1905년 편입 이후 징수한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일본 스스로 독도 영유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⁰ 유미림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앞선 연구 결과를 확장시키며 종래의 주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절목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목은 허위 문서이며,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배계주가 1902년에는 울릉도에 부임하지 못했으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절목에 근거한 과세가 관세인지 통항세인지 밝혀져야 하고, 울도군수의 과세 행위가 독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절목의 과세 조항은 수출세를 부과한 것이고 수출품에 독도 강치 등이 포함되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³¹

그러나 『울도군절목』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주장하는 연구도 이어졌다. 김호동은 절목은 1902년 대한제국 내부에서 울도군에 내린

29 유미림, 2012, 「수세(收稅)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영토해양연구』 4.

30 유미림, 2015,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31 유미림, 2017, 「『울도군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선포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행정 관할 증거」, 『영토해양연구』 13.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군수 배계주가 ‘군규(郡規)’ 확립을 위해 절목을 만들어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내부는 울도군수인 배계주가 올린 절목을 그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배계주에 보냈으며, 이것이 그 집안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배계주가 분쟁중이던 울릉 군민들을 장악하기 위해 ‘군규’를 만들어 절목의 이름으로 내부에 상신하여 재가를 받아 울릉도에 부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면직되어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목을 두고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관할 구역을 대한제국이 실효적으로 경영한 증거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 절목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무단 벌목과 가옥, 토지 매입 상황, 울도군의 행정 체제 구축 문제, 세수 확보 문제 등 당시 울릉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료라고 평가하였다.³² 김영수, 유미림, 이상태가 관련 연구를 통해 『울도군절목』이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의 증거이며, 실효지배의 증거라고 평가한 것과는 다른 평가로 관련 연구의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울도군절목』의 발굴 경위와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연구와 논쟁은 독도 연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료는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이 대한제국 시절 울도군수였던 배계주와 심홍택의 후손을 오랫동안 찾은 끝에 발굴해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연구와 논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관련 사료, 인물, 분야 등으로 관심을 넓혀 연구 주제와 내용을 확장시켜 나갔다. 사료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 ‘우연’이 아니라 사료 발굴자의 목적의식적 사고와 행동의 결과이며 오랜 시간 공들인 결과이다. 『울도군절목』은 이렇게 발굴된 사료이며,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사료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이 연구자의 역량과 노력이 투여된 결과로 발굴된 사료이다.

『영토해양연구』 2호에 안용복 관련 사료해제가 수록되어 있다.³³ 사료는

32 김호동, 2013, 「『鬱島郡節目』을 통해 본 1902년대의 울릉도 사회상」, 『장서각』 30.

33 유미림, 2011,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사료 발견과 그 의미」, 『영토해양연구』 2.

숙종이 과거시험에서 1693년에 일어난 ‘안용복 사건[울릉도 쟁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시험지와 답안지이다. 이 사료는 당시 과거에 응시한 경북 의성의 신덕함(申德函) 문집에 실려 있었다. 이 사료는 신덕함 후손으로부터 입수하여 영남 지역 선열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2011년 8월 경북 대구 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가 공개하였다. 사료는 시험문제 1장 반, 답안지 12장 반 등 모두 14장으로 A4 크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다.³⁴ 해제에 따르면 시험문제는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대일(對日) 대처 방안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묻는 것이었다. 신덕함은 당시 조정 대신들의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비판하였다. 우선 ‘변수를 보내 점거하여 지키자’는 의견은 울릉도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고 우리 군사들이 수로에 익숙하지 않아 표류하거나 역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패하기 쉬운 정책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들의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가 변방 방비를 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남의 영토를 탐하는 상대이므로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울릉도 쇄환정책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審勢得人’, 즉 형세를 잘 살피고 적임자를 얻어 처리하는 방법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덕함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숙종의 이 책문은 신덕함이 직접 과거장에서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소과와 대과로 구분되며, 예비시험 격인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별된다.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대과에 급제해야 하는데 초시, 복시를 합격한 후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책문을 지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전시에서 탈락자는 없지만, 합격 등수가 확정된다.³⁵ 따라서 신덕함이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책문은 다른 사람을 통해 시험문제를 알게 된 후 스스로 지어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의 지적

34 『경향신문』·『문화일보』 2011, 11, 14(검색일: 2018, 7, 20).

35 김태완, 2014,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소나무, 10~11쪽.

대로 이 사료를 통해 당시 조선이 울릉도 쟁계를 국가적 중대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울릉도를 포함한 변방 영토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숙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관련 사료해제로는 고종의 밀명으로 울릉도를 조사한 이명우의 『울릉도기(鬱陵島記)』도 있다.³⁶ 이 사료는 이명우의 문집 『묵오유고(墨吾遺稿)』에 실려 있는데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명우는 1882년 3월 고종의 명을 받고 울릉도로 건너가 약 7일 동안 조사하였는데, 울릉도를 개척할 경우 경작지와 주거 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을 조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명우가 울릉도 조사를 하고 온 직후인 4월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받은 이규원이 울릉도 조사길에 나선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이규원도 울릉도 조사를 마치고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를 남겼다. 고종이 이때 울릉도 조사를 명한 배경에는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침입과 별목 때문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고종이 이명우와 이규원을 비슷한 시기에 울릉도를 조사하게 한 것은 울릉도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을 교차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규원은 1881년 3월 고종의 명을 받아 이듬해 백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울릉도로 건너가 11일 동안 조사한 기록을 『울릉도검찰일기』로 남겼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종은 울릉도 개척을 지시했다. 양태진도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해 이규원의 검찰 활동이 조선의 해양영토 관리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조선이 울릉도에 백성을 거주하게 하고 개척하도록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정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³⁷

사료해제에서 보듯 숙종의 책문과 고종의 조사 명령은 모두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체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의 일단을 보여주

36 유미림, 2013,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 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영토해양연구』 6.

37 양태진, 2013, 「조선 정부의 영토관할정책 전환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6.

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또한 안용복 관련 숙종의 책문과 이명우의 문집 발굴은 연구자의 역량과 관심으로 발굴·공개된 사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도가 고유영토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숙종대에서 고종대까지, 한양부터 울릉도까지, 개인 기록에서 정부 기록까지 독도 연구를 위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하는 대상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울릉도에 관한 서양의 자료도 적극 발굴·연구되었다. 신용하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899년 12월 우용정에게 조사단을 꾸려 울릉도를 시찰하도록 하였고, 조사단은 1900년 5월 출발하였다. 조사단의 목적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채벌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이 조사단에는 당시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와 일본 영사관원 등도 포함되었다. 라포르트는 대한제국의 요청으로 1899년, 1900년 두 번에 걸쳐 울릉도 조사단에 참여하였는데, 조사단에 서양인을 포함시킨 것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일본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였다.³⁸ 이때 조사단으로 참여한 라포르트는 울릉도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다.

홍성근은 1899년 울릉도를 시찰한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발굴하였다. 그는 당시 『황성신문』과 구한국 외교문서의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여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이 자료를 발굴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울릉도의 지리, 주민 구성과 생업, 불법 거주 일본인들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또한 필자는 사료 발굴의 경위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결과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제정 배경과 내용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제안하였다.³⁹ 이 자료 발굴과 연구 성과는 장세윤의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38 신용하, 2015, 「대한제국의 독도영토 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 18.

39 홍성근, 2013,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The Report on Ulleungdo by E. Laporte and Ulleungdo in 1899)」, 『영토해양연구』 6.

장세운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침탈,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대응을 분석하였다.⁴⁰ 그는 일본 정부와 어민들의 울릉도, 독도 침탈은 오랜 시간 끈질기고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대응은 너무 미약했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어민들과 이규원, 배계주, 심홍택, 이명래 등 지방 관료 등은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릉도, 독도와 관련한 서양 자료 발굴은 정인철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 사실을 추적하며,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국가기록원(The France National Archives)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탐사 목적이 어장 개척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프랑스는 포경 산업의 성장과 남획에 따른 자원 고갈에 대한 타개책으로 새로운 어장 개척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독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⁴¹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사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왜 프랑스 포경선이 동해까지 진출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준 이 연구는 발상의 전환이 사실의 확장으로 이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했다는 주지의 사실로부터 군함이 아닌 포경선이 동해까지 진출한 이유를 탐구함으로써 독도 발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었다.

한편 울릉도, 독도 연구와 관련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울릉도 수토 정책이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운영되었는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는 1694년 시작되어 1894년 종료될 때까지 200년간 지속되었다. 이원택은 조선 후기와 19세기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를 해제

40 장세운, 2015,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과 한국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10.

41 정인철, 2014,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7.

하고 번역하여 『영토해양연구』에 연속으로 게재하였다. 이원택은 『각사등록』 강원감영의 울릉도 수토 자료를 소개하며, 선행 연구⁴²에 대한 보완을 위해 총 26건의 새로운 사료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소개하였다. 사료 해제를 통해 울릉도의 수토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개화기의 울릉도 개척 시기에도 지속되었다가 울릉도 개척의 진전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189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⁴³ 또한 필자는 이 사료해제의 연장선상에서 『일성록』에 실려 있는 울릉도 수토 관련 세 건의 보고서와 『한성주보』에 실려 있는 한 건의 보고서도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소개하였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들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 통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⁴⁴ 또한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울릉도 수토 연구의 방향은 이양선 및 표류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수토 사례와 연관시켜 연구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통치 행위로서 수토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⁴⁵ 심현용은 수토 관련 연구를 위해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유물·유적 등 고고자료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켰다. 그는 수토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 울진, 삼척 지역을 조사하여 포진성, 산수호, 석비, 각석문, 현판, 고문서 등의 관련 자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고문서의 기록을 토대로 수토정책의 폐지 시점을 1894년이 아닌 1895년일 가능성과 수토 간격이 초기에는 3년설이 정식이었으나, 1797년 이후 2년설로 바뀌었다고 보았다.⁴⁶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연구가 문헌자료뿐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

42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유미림, 2009, 「장항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43 이원택, 2014, 「조선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8.

44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

45 이원택, 2017, 「19세기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23.

46 심현용, 2013,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영토해양연구』 6.

의 자료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도 문제와 관련해 울릉도 이외 지역의 수도 문제로 연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도 관련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수집과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은 독도연구소가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다.⁴⁷

2. 독도 관련 사료의 정리와 활용

『영토해양연구』 11~12호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공개·발굴 자료의 목록과 해제가 수록되었다. 필자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2014년부터 독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자료를 화상 자료로 제작하여 내각관방 사이트(<http://www.cas.go.jp/>)에 게재하고 있다. 주로 17세기 말의 울릉도 쟁계, 18세기 중엽 에도막부 오야·무라카와 가의 울릉도 도해 관련 조사, 19세기 초 일본 어민의 울릉도 재도해 시도와 처벌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1950~1960년대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 시기에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4~2015년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조사·정리에는 2005년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활동 성과에 반영된 자료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일본의 주장을 검토, 반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⁸ 또한 필자는 1950~1960년대 한일 간 영유권 논쟁에서 각각 어떤 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고 반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그는 연구자들의 사료 이용과 연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은 동일한 자료에서 각각 유리한 부분만 발취·인용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분화된 쟁점에 매몰된

47 손승철, 2015, 「조선 후기 수도 기록의 문헌사적 연구—울릉도 수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1, 132쪽.

48 정영미, 2016, 「일본의 독도 영유권 근거 자료 조사·정리의 역사적 경과와 의의」, 『영토해양연구』 11.

다는 것이다.⁴⁹ 이 같은 지적은 독도 연구 성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정영미는 한국 외교부가 발간한 『독도문제』를 검토하여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의 발굴 경위를 정리하였다.⁵⁰ 이 지도는 독도와 울릉도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는 것이다. 사료해제에 따르면 삼국접양지도가 수록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은 1952년 3월 제1차 한일회담이 진행중이던 때 문보인이 한국에 유리한 자료라며 외무부에 제공했다고 한다. 원래 이 자료는 일본해양학회 『해양지과학(海洋之科學)』 제3권 제6호에 게재된 자료였다. 이 자료를 받은 외무부는 당시 도쿄에서 한일회담을 진행하고 있던 대표단에게 전달하였다. ‘삼국접양지도’는 이 책에 수록된 5장의 지도 중 하나로 조선,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여러 나라의 영토 형세를 보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원 저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1954년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지도의 목판본 사본을 입수했고, 1964년에는 『삼국통람도설』 6권을 확보했으며, 이후 프랑스판을 비롯한 여러 판본에 대한 수집과 정보가 취합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해주는 일본 측 자료의 발굴 경위를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재구성하고, 한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남영우는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삼국접양지도’의 작성 배경과 의도를 밝힘으로써 연구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르면 하야시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외국의 침략, 특히 인접 3국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야시는 일본과 인접한 3개국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본도 군대를 발동해 간섭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국수주의 사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따라서 하야시는

49 정영미, 2016, 「사료로 본 독도 논쟁사-새로운 자료 발굴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전사(前史)로서」, 『영토해양연구』 12.

50 정영미, 2017, 「독도 자료 발굴사-『독도문제』, 『삼국접양지도』 발굴」, 『영토해양연구』 13.

일본 군대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평소 3국의 지리적 정보 숙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삼국접양지도’도 이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군용지도’의 성격이라고 평가하였다.⁵¹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측에 유리한 자료로 취급되는 ‘삼국접양지도’에 담긴 하야시의 사상과 작성 목적을 알 수 있고, 특히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료를 활용할 때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기본이지만, 그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과 작성자에 대한 탐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영토해양연구』에서 사료해제로 소개된 사료들은 해방 이전 시기에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방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 대한 해제는 <표 2>의 4번과 10번이다. 4번은 독도연구소의 연구 지원 결과물인 일본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중 독도 자료에 대한 해제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시기별 3단계로 독도에 대한 방침을 수립, 대응하였다. 제1단계(1952~1960)에서는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포 이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제2단계(1962~1963)에서는 김종필과 오히라 간 대타협으로 청구권 문제가 타결된 후 한국이 독도 문제를 제3국 조정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에 대응한 시기이다. 제3단계(1965)는 한일회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이를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공식화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⁵² 연구팀이 수만 장에 이르는 일본 외교문서 중 독도 자료를 선별하고 검토한 결과를 통해 일본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독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결과 독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일본 언론의 비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조인된 직후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언론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교환공문’을 언급하며 ‘양보’, ‘포기’, ‘굴욕’이라는 표현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비판했

51 남영우, 2016,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영토해양연구』 11.

52 이원덕, 2012, 「일본 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영토해양연구』 3.

다. 반면 한국의 주요 신문들은 ‘교환공문’의 중요성을 간과해 주목하지 않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신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평가한다.⁵³ ‘교환공문’에는 양국 간 분쟁 발생 시 외교적으로 해결하되,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국 간 합의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환공문의 쟁점은 한일 양국의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도는 한일 간 분쟁 대상이 아니므로 교환공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반면, 일본은 한일 간 유일한 미해결 문제는 독도 문제이므로 분쟁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양국의 상반된 주장은 양국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독도 밀약설’과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는 한일협정 조인 당일 까지 양국 간 줄다리가 이어진 끝에 최종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날의 타협 결과에 대한 양국의 기록은 각각 다르다. 일본 문서에는 이동원 외무장관이 독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로 귀국 후 독도는 교환공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더라도 일본이 즉각 공식적 반론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동원이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독도가 교환공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을 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사토 총리가 동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문서에는 이동원 외무장관이 독도가 분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사토 총리와의 회담에서 구두로 보장받았고, 또한 우리 정부가 장래 발생할 문제만이 분쟁 대상이라고 주장해도 일본 정부가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받았다고 기록했다.⁵⁴ 공개된 양국의 문서만 놓고 보면 독도가 한일 간 분쟁 대상 지역으로 합의되어 교환공문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 같은 모호함은 한일협정의 다른 의제 합의문에도 나타나 있어 한일협정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학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불법 점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53 황재원, 2015, 「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영토해양연구』 9.

54 박진희, 2017, 「한일회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69.

울릉도 어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과도정부는 민간 단체인 조선산악회를 통해 조사 활동을 실시했는데, 조선산악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었다. 조선산악회는 해방 이후 적극적인 국토답사와 학술조사사업인 ‘국토구명사업(國土究明事業)’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학술조사단원은 당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⁵⁵ 이기석이 사료해제를 통해 공개한 자료는 조선산악회가 한국산악회로 이름을 바꾼 후 1952년 두 번째로 울릉도와 독도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 작성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이다.⁵⁶ 이 자료는 1952년 당시 학술조사단원으로 참가한 서울대 지리학과 이지호 선생의 사후 2015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악회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국토구명사업’을 실시하여 국토의 지형지세, 동식물, 지질, 방언 등 각종 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이 중 1947년, 1952년, 1953년 세 번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해방 후 일본인의 불법적인 독도 침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2차는 1차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2차 조사는 1952년 9월 발생한 미국 공군기의 독도 폭격 사건으로 울릉도만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해 10월 강연회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공개되었으나, 정부에 보고한 조사보고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산악회의 울릉도와 독도 학술조사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선학들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에 대한 목적과 성과가 오늘날에도 이어져 과학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길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에 홍종인, 홍이섭, 박병주, 김원룡, 이지호 등 당대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산악회의 두 번째 학술조사 목적은 1차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관련 쟁점들이 1차 조사 때

55 조선산악회의 학술조사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2장 참조.

56 이기석, 2017,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파견계획서」」, 『영토해양연구』 14.

인 이 당시에 이미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IV. 맺음말

『영토해양연구』에는 제언 등의 형태로 독도 연구와 한일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논문도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머리말에서 독도 연구 성과를 검토한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을 정리했는데 문제점 개선이 곧 독도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며, 독도 연구에서 기획의 중요성과 심화 연구의 필요성, 사료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언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종합해 독도 연구와 독도연구소의 과제와 방향성을 가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재정은 독도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미비한 전후 처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직시하되, 현실적으로는 양국이 타협과 양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한국이 세심하고 단호하게 관리하는 쪽이 낫다고 조언한다.⁵⁸ 또한 그는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지 말고 지금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자고 제안한다. 한일 사이에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는 유일무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해결할 현안이 많다는 사실도 상기시키고 있다.⁵⁹ 조세영은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국제법 문제, 정치·외교 문제로서 다

57 이기석 선생님께서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학술회의(2018.8.13)에서 이 자료 사본을 필자에게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58 정재정, 2013,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영토해양연구』 5.

59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중적 성격을 갖는 만큼 ‘종합적 구상력(構想力)’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역사 문제, 독도 문제와 같은 한일관계의 기본 모순은 원칙을 견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경제·통일 분야는 분리해서 실용적으로 협력한다는 ‘분리 대응’의 발상을 주문하고 있다.⁶⁰ 정재정과 조세영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불변의 사실을 토대로 단호하되, 이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을 뒤덮지 않도록 민간 교류 부문의 활성화를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독도를 이슈화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연구소의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한편 앞서 살펴본 대로 이성환은 『영토해양연구』 창간호에서 독도 연구 성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은 수세적, 일본은 공세적인 기본 구조에서 한국의 독도 연구 대부분은 일본의 주장과 자료 해석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특히 한국의 독도 연구가 당위론적 결론으로 출발하여 직간접적 영유권 강화로 귀결되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벗어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한국 측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독자적 관점과 논리의 창조적 재구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⁶¹ 2011년 『영토해양연구』 창간호로부터 지금에 이르러 그의 지적과 제안은 얼마만큼 개선되고 반영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선행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학제 간 연구를 기획,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는 독도연구소가 독도 관련 연구 성과를 수합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정기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진즉에 제시된 바 있다.⁶² 연구의 질보다는 양적 위주의 연구 풍토는 독도 연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학계의 문제이다. 연구자들 간

60 조세영, 2013, 「동북아 영토 마찰의 성찰과 교훈」, 『영토해양연구』 6.

61 이성환, 2011, 위의 글, 252~253쪽.

62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135쪽.

의 소통과 공유의 부재, 온정주의적인 관대한 평가 풍토, 연구과제의 불철저한 관리 등도 문제이다. 따라서 독도 연구의 양적 팽창이 질적 제고와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독도연구소의 기본 임무에 속한다. 그래야만 독도연구소가 독도 연구를 기획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연구소가 독도 연구에 기여한 성과를 토대로 현재 미진하거나 확장해야 할 연구 분야를 ‘기획’해서 독도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독도연구소와 연구원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국문초록

해방 이후 국내 독도 연구의 최대 성과는 역사학, 국제법, 지리학, 국제정치, 역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갖고 있었고,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독도연구소가 큰 역할을 하였다. 독도연구소는 영토와 해양 관련 전문 학술지로 2011년 『영토해양연구』를 창간하였다. 이 논문은 『영토해양연구』에 수록된 독도 관련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는 자료 발굴과 실증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도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전문성을 토대로 독도에 대한 연구와 자료 발굴에 앞장섰다. 그 결과 독도연구소와 『영토해양연구』가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독도연구소가 문을 연 지 1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독도 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기획’ ‘선도’할 수 있도록 독도연구소와 연구원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주제어〉

독도연구소, 『영토해양연구』, 자료 발굴

ABSTRACT

The Trends and Results of Research on Dokdo:
Focusing on the Dokdo Research Institute's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Park, Jinhe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ince Korea's liberation in 1945, the greatest output of domestic research on Dokdo has been the accumulation of achievemen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history, international law, geography, international politics and history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prove that Dokdo is an integral part of Korean territory. The goal was fulfilled successfully and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played a major role in this process.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launched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in 2010 as an academic journal for territorial and maritime issues. This paper analyzed research papers on Dokdo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and the journa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terials discovery and empirical research, while the institute's researchers who have expertise are at the forefront of Dokdo-related studies. As a result,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and the journal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The Dokdo Research Institute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It is time for Dokdo researchers to concentrate their capabilities and gather wisdom to "plan" and "lead" studies on the islands.

Keywords

Dokdo Research Institute, Finding of Historical Materials,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참고문헌

- 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외 지음, 2013,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 역사재단.
- 김병렬·노영구·이상근, 2009,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소용·남상준, 2015, 「영토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독도교육을 사례로」, 『초등교과교육연구』 21.
- 김호동, 2012,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 『이사부와 동해』 Vol. 4.
- 김호동, 2013, 「鬱島郡節目을 통해 본 1902년대의 울릉도 사회상」, 『장서각』 30.
- 문철영, 2016, 「독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제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No. 21.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진희, 2006, 「제1공화국 시기 ‘평화선’과 한일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 박진희, 2009, 「한·일협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평화선과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 정치외교의 주요 쟁점과 논의』, 선인.
- 박진희, 2017, 「한일회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69.
- 배경한, 2014,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蔣介石」, 『역사학보』 224.
-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 손승철, 2015, 「조선후기 수토 기록의 문헌사적 연구－울릉도 수토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1.
- 신용하, 2015, 「대한제국의 독도 영토 수호정책과 일제의 독도 침탈정책」, 『독도연구』 18.
- 오제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 유미림, 2006, 「독도 자료집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 이성환, 2011, 「독도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0년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1.

- 이성환, 2014,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49.
- 이원덕·전상숙 등, 2013,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 이원택, 2017, 「19세기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23.
-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 정병준, 2014,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 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
- 정재정, 2014,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역사비평사.
-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시준, 2014,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 한철호, 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울진 대풍헌 소장 「완문」과 「수토절목」의 해제 및 번역

해제 및 교열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탈초 및 번역 **정명수**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I. 울진 대풍헌 자료에 관하여

울진 대풍헌 및 대풍헌 관련 자료에 관해서는 심현용 박사의 「울진 대풍헌의 울릉도·독도 수토 자료와 그 역사적 의미」에 종합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다.¹ 심현용 박사는 이 글에서 그간 본인의 연구 및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여 대풍헌 자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대풍헌 자료 전체를 탈초 번역하여 학계에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 울릉도 수토(搜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토론들이 많이 진척되었다. 이에 심현용 박사는 대풍헌 자료의 정밀한 독해 및 재번역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엄청난 공력을 들여 만들어낸 탈초문 및 번역문 전체를 동북아역사재단에 넘겨주면서 대풍헌 자료의 재번역을 요청해왔다. 그리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탈초 및 번역을 마치고, 독도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영토해양연구』에 차례로 소개하게 된 것이다.

1 심현용, 2015, 「울진 대풍헌의 울릉도·독도 수토 자료와 그 역사적 의미」, 영남대 독도연구소 편, 『울진 대풍헌과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수토사』, 선인.

대풍헌(待風軒)은 바람을 기다리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이 건물은 현재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202번지에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는 강원도 평해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搜討)를 위해 수토관(搜討官)들이 구산포의 이 건물에서 순풍이 불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대풍헌 자료는 건물 안팎에 걸쳐 있는 현판과 기문(記文) 18점과 소장하고 있는 2점의 고문서 「완문」과 「수토절목」을 말한다.²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대풍헌에 소장되어 있는 2점의 고문서 「완문」과 「수토절목」이다. 「완문」과 「수토절목」은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다. 1997년에 권삼문 박사에 의해서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고, 2005년에 이옥 박사에 의해 다시 소개되었다. 그러다 2008년 심현용 박사에 의해 원문과 번역문이 소개됨으로써 학계에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었다.³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완문」과 「수토절목」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약간씩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II. 「완문」과 「수토절목」의 성립 연도에 관하여

먼저 「완문」과 「수토절목」의 성립 시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들을 알아보기 위해 조금 길지만 심현용의 글을 인용하겠다.⁴

이 두 고문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완문」은 ‘신미년’이 기록되어 있고, 「수토절목」은 ‘계미년’이란 간지와 그 내용으로 보아 「완문」보다 12년 후로 보이며, 문서의 재질이나 현 상태로 보아 「완문」은 ‘1811년’ 또는 ‘1871년’

2 심현용, 2015, 앞의 글, 144쪽 참고.

3 심현용, 2015, 앞의 글, 142~143쪽.

4 심현용, 2015, 앞의 글, 201~202쪽. 인용문의 각주 세 개는 인용문에 원래 있던 각주를 그대로 옮겨온 것임.

으로, 「수토절목」은 '1823년' 또는 '1883년'으로 추정되었다⁵ 그러나 상선이 수세하고 선주인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한국에서 18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이고, 1883년(고종 20) 7월에 조인된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조선의 경상도 해안에서 일본 어선의 어업 활동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1883년(고종 20) 7월 이후에는 수토사를 과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문서는 늦어도 '1883년' 이전의 것으로 보고 「완문」을 '1811년', 「수토절목」을 '1823년'으로 추정할 견해가 있다⁶ 그런데, 「월송만호 장원의 영세불망지판」(1870. 7)과 「평해군수 삼능무·이유흡 영세불망지판」(1870. 7)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현판 제작 시까지 이러한 「완문」과 「수토절목」의 내용들처럼 대풍헌 주변 지역민들을 위한 수토 경비 조달 방법 등이 확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의 두 문서는 이 현판들보다 그 시기가 늦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문」의 '신미년'은 '1871년(고종 8)'으로, 「수토절목」의 '계미년'은 '1883년(고종 20)'으로 추정된다. 이는 거일리에서 발견된 「구암동 김중이 각양공납초출」(1893) 문서에서도 김중이가 '수토전(搜討錢)'을 내고 있고, 「공납정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1895. 11. 28.) 문서에서 '구산 수토식리'와 '관 수토식리'를 거두는 것이 확인되며, 또 최용석, 김말동, 윤인길, 박학손, 정운이, 박무회, 박무갑 등 다수의 주민들이 '수토전'을 내는 것에서 입증이 된다 하겠다⁷

「완문」에 기록된 '신미년'과 「수토절목」에 기록된 '계미년'이 언제인지 고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다⁸ 그런데 「수토절목」에 삼척영장이 계미년에 수토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5 권삼문, 1997, 「울진의 고문서 -마을 문서와 군자-, 『향토문화』 11·12, 향토문화연구회, 212~217쪽; 권삼문, 2001,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296~303쪽.

6 이욱, 2005, 「〈완문 신미 7월 일〉, 〈수토절목 공계변통 계미시월 일 구산동〉, 『일본의 역사왜곡과 대응방안』, 광복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국학진흥원, 148쪽.

7 심현웅, 2013,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173~174쪽.

8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 실태와 그 의의」, 『울릉도·독도 수토관 파견과 독도 영유권 수호』(2018년도 한국영토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6~17쪽 참고.

이 글은 영원토록 준행(遵行)할 일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남북 진(津)의 9동(洞) 백성들이 울진 소장(訴狀)의 내용에,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려 할 때 삼척진영(三陟鎭營)의 사또와 월송만호(月松萬戶)가 3년 간격으로 행하는 것이 정식(定式)이고, 바람을 기다려 배를 출발하는 절차는 매번 구산진(邱山津)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월송진(月松鎭)은 본진(本津: 구산진)에서 서로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진영(鎭營: 三陟營將을 말함)이 행차할 경우에는 다 본진에서 유숙하였습니다. 유숙하는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바람의 형세가 좋고 나쁨에 달려 있으니, 그러한즉 8, 9일이나 십수 일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비록 유숙하는 날이 길지 않더라도 하루 이를 안에 각 항목의 비용 액수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적지 않은 비용을 우리네 9동(洞)에게 담당시키는 것이 곧 우리 9동의 큰 폐해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울릉도를 수토(搜討)할 때에 진영(鎭營)의 행차는 6년에 한 번 있었으나, 금년으로 말하자면 이를 동안 지출한 비용이 거의 100금(金)에 가깝다… 계미년 10월⁹

지금까지 계미년이 몇 년도인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1883년(고종20)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계미년을 1883년으로 비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기사를 보면, 1883년에는 월송만호 안영식이 수토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영식은 1882년 10월 20일 월송만호에 임명되었다.¹⁰ 그리고 1883년 12월 29일 인사고과(人事考課)와 관련하여, 그해 봄에 안영식이 울릉도를 수토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병조에서 또 아뢰기를, “제도의 포핍 계본(褒貶啓本)을 열어보니, … 전 강원 감사 윤우선(尹宇善)은 계본 가운데 월송만호(越松萬戶) 안영식(安永植)에 대해

9 아래 3장에서 해당 부분 원문 및 번역문 참조.

10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10월 20일: “병비(兵批)에, … 안영식(安永植)을 월송만호(越松萬戶)로 삼았다.”

‘지역이 좁고 일이 적어 수토(搜討)하는 일뿐이다.’라고 지목하였으며, 경상 감사 조강하(趙康夏)의 계본 가운데 … 지목하였습니다. 모두 하고(下考)에 두어야 마땅함에도 상고(上考)에 두었으니 전혀 전최(殿最)를 엄히 밝히는 뜻이 없습니다. …” 하였다.¹¹

따라서 필자는 1883년에 월송만호 안영식이 울릉도를 수토했고, 같은 해에 다시 삼척영장이 울릉도를 수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토절목」에 나오는 계미년은 1883년이 아니라 1823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게다가 1823년의 경우, 『항길고택일기(恒吉古宅日記)』를 근거로 삼척영장이 울릉도를 수토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819년 삼척영장 오재신의 수토와 1827년 삼척영장 하시명의 수토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간년윤희 수토 원칙을 적용하면 1821년과 1825년은 월송만호의 수토 차례가 됨을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사이의 1823년은 삼척영장의 수토 차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또한 「수토절목」에 나오는 삼척영장의 울릉도 수토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토절목」에 인용된 「신미년 절목」의 신미년은 당연히 계미년(1823)보다 앞선 1811년이 되고, 따라서 「완문」의 신미년도 1811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완문」에 부기된 을사년은 신미년(1811)보다 앞선 1785년(정조 9)일 가능성이 크다. 「완문」의 “전에는 연해(沿海)의 9동(洞)에서 힘을 합쳐 그때그때 지켜왔는데”라는 구절도 근거가 된다.

11 『승정원일기』 1883년 12월 29일: 又啓曰, “坵見諸道褒貶啓本, … 江原前監司尹宇善啓本中, 越松萬戶安永植, 以小防無事搜討而已爲目, 慶尙監司趙康夏啓本中, … 則俱宜置下考, 而置諸上考, 殊無嚴明殿最之意.”

Ⅲ. 「완문」과 「수토절목」의 원문 및 번역문

完文

辛未七月日

右完文爲永久遵行事. 卽接邱山洞民等狀內, 鬱陵島搜討時, 鎮營使道越松萬戶行次雜費奉行等節, 前所沿海九洞之并力隨護者, 而挽近矣洞惟此專當, 則偏害賢勞不一滌陳. 而自洞僅聚錢, 爲壹百貳拾兩, 搜討時, 萬一添補之資是在中, 分授各洞, 存本取利, 每年二月推捧亦爲有置. 莅任以來, 究諸邑弊, 則如矣洞搜討時難支之狀, 已爲洞悉. 而右錢壹百貳拾兩, 布殖於各洞, 而亦是辦費之惠乙, 仍于鄉作廳, 的只各洞良中, 分排右錢, 而每兩頭參分邊, 每年二月推捧, 搜討時用費添補之意, 成完文以給爲去乎. 以此遵行宜當者.

辛未七月日.

官【押】

後

表山洞 錢拾伍兩

烽燧洞 錢捌兩

於峴洞 錢柒兩 [乙巳三月初七日錢二十兩出]

直古洞 錢貳拾兩

狗巖洞 錢伍兩

巨逸洞 錢貳拾兩

浦欠洞 錢拾兩

也音洞 錢伍兩

邱山洞 錢參拾兩

완문(完文)

신미년(1811, 순조 11) 7월 모일.

이 완문은 영원토록 준행(遵行)할 일에 관한 것이다. 방금 구산동민(邱山洞民)들이 올린 소장(訴狀)의 내용을 보니, “울릉도(鬱陵島)를 수도(搜討)할 때 진영사도(鎭營使道: 三陟營將을 말함)와 월송만호(越松萬戶)의 행차에 드는 잡비와 수도를 봉행(奉行)하는 절차 등을 전에는 연해(沿海)의 9동(洞)에서 힘을 합쳐 그때 그때 지켜왔는데, 지금은 저희 동(洞)에서만 유독 이 일을 전담하여 편중된 피해와 심한 고통을 일일이 니열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동 별로 삼가 돈을 모아 120냥(兩)을 마련하여 수도(搜討)할 때 만의 하나 보충해야 할 비용이 있거든, 각 동(洞)에 나누어주어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만 취하되 매년 2월에 추봉(推捧)¹²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부임한 이래로 여러 고을의 폐단을 살펴보고서 너희 동(洞)의 수도(搜討)할 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이미 자세히 알게 되었다. 위의 돈 120냥을 각 동(洞)에 나누어주어 이자를 증식하니 또한 비용을 조달하는 혜택이 되며, 이에 향청(鄉廳)과 작청(作廳)¹³에서 각 동에게 위 돈을 나누어주고 매 냥(兩) 당 3푼(分) 정도를 매년 2월에 추봉(推捧)하여 수도(搜討)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보태 주었다는 뜻으로 완문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니, 이대로 마땅히 준행하도록 하라.

신미(辛未)년 7월 모일.

관(官)【수결서명】

다음(後)

표산동(表山洞) 돈(錢) 15냥.

봉수동(烽燧洞) 돈(錢) 8냥.

12 추봉(推捧): 돈과 곡식을 물려 거두어들이는 것.

13 작청(作廳): 고을에서 아전이 집무를 보는 곳.

어현동(於峴洞) 돈[錢] 7냥[을사(乙巳, 1785)년, 3월 초7일 전 20냥을 넘].

직고동(直古洞) 돈[錢] 20냥.

구암동(狗巖洞) 돈[錢] 5냥.

거일동(巨逸洞) 돈[錢] 20냥.

포흠동(浦欠洞) 돈[錢] 10냥.

야음동(也音洞) 돈[錢] 5냥.

구산동(邱山洞) 돈[錢] 30냥.

搜討節目供饋變通

癸未十月日

邱山洞

節目

右爲永久遵行事. 卽者南北津九洞民人等呈狀內, 以爲鬱陵島之搜討, 三陟鎮營使道與月松萬戶間三年行之者, 乃是定式, 而待風發船之節, 每於邱山津而爲之是乎所. 月松鎮之於本津, 則相距稍近, 其所費用, 雖不至於艱多, 至若鎮營之行, 則本津留住也. 爲日之久近, 都關於風勢之利不利, 然則易至於八九日十數日矣. 雖留住之不久, 若一二日之內, 各項費用之數, 誠爲不少, 而以不少之費, 擔當於矣徒九洞者, 乃是九洞之巨弊是如乎. 每於收錢之時, 怨惡相加, 咸曰難支. 故齊會取議, 則商船之母論魚鹽與糞物, 到泊浦口, 下陸津頭時, 受貫, 八道沿邊邑通行之例也而矣. 徒南北津良中, 各道商船之年後來泊者, 亦云多矣, 依此例, 隨多少, 受貫取殖, 補用於惟正之費者, 似合於矣各洞永保之道也. 以此意成給節目, 俾祛不細之民瘼亦爲有置.

蓋此鬱島搜討時, 鎮營之行, 則六年一次, 而以今年言之, 兩日內支用之費, 殆近百金矣. 邱山津民之訴則曰, 分徵九洞, 乃是前例, 其他八洞民之訴則曰, 徵數此多, 莫可支吾, 互相呼訴, 非止一再. 左處右斷, 似不無彼此稱冤

之端是如乎,第其兩日之費,既如是顆然矣,若值風不利而或至於十餘日之留住,則尤將奈何弊.誠非細幢幢,一念思所以支保之策是在如中,齊訴適至參互事勢,則於商人別無大失,於九洞省弊不些.大抵鬱島在於海中,搜討官之待風,亦在於津頭,而其費用之從前分徵於九洞者,誠由於濱海之致.則商船之去來也,亦豈無些少之受賞,而況他各道沿邊邑通同之例乎.一依汝矣等所訴,受賞數及舉行條件,並以這這後錄.成節目四件,一則置之作廳,一則出給於揮羅浦,一則出給於直古洞,一則出給於邱山洞是去乎.以此永久遵行,毋或違越宜當者.

癸未十月日

官【押】

後

一,商船之受賞也,不可無一定之規矣.鹽則每石五分,明太則每駄一錢式是齊.

一,既已受賞於商船,則當該船主人,亦不無賞錢.藿船主人則二兩,鹽船主人則五錢,微魚船主人則五錢式是齊.

一,今此節目已成,其收捧之節,毋論某津,商船如或來泊是去等,該洞任與船主人,眼同以某商船來泊之意,來報官家是齊.

一,受賞之節,既已定式,則收捧之際,相蒙之歎,難保其必無,不可無句檢之監官.監官段,自邱山洞,擇其該洞民中稍實勤幹者一人,報官差出,使之逐津受賞,而受賞之際,與各該洞任及船主人,眼同舉行是齊.

一,商船到泊之後,既有該津洞任之報,則自官即爲題,送于受賞監官,使之舉行,而所捧錢段,計其多少,當該監官來付邱山洞,計年取殖是齊.

一,今此受賞錢,既付邱山洞,使之計年取殖,則無論鎮營與月松,間三年搜討行待風時,支用下記.自邱山洞全當舉行,而切勿侵徵於各洞,俾無如前紛訴之弊是齊.

一,毋論某津,商船來泊之後,如有掩匿不報之弊,是如可現發於廉探之下,

則當該尊位洞任及船主人等, 斷當限死嚴治是齊.

一, 上道進支, 既有官供, 則不必學論, 而至於陪下人馬之供饋, 則自官差出
勤幹色吏一人與邱山洞任, 眼同舉行, 而所用下記, 一依辛未節目用下爲
乎矣, 切勿濫下是齊.

一, 鹽船來泊也, 每石五分式, 既已成節目, 酌定收捧, 付之邱山洞, 補用於
搜討官, 下記則鹽漢之受貰, 可謂疊徵, 自今爲始永革是齊.

一, 九洞巨瘼, 都付邱山洞, 俾爲矯揉, 則錢雖有受貰處, 亦不無酬勞之典,
小小烟戶赴役除減是齊.

一, 月松萬戶搜討之時, 舉行之節及其他諸條, 已悉於辛未節目, 今不必疊
床是齊.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是齊.

수토절목(搜討節目) 수토할 때 음식 제공 등의 변통에 관한 것

계미년(1823, 순조 23) 10월 모일.

구산동(邱山洞).

절목(節目)

이 글은 영원토록 준행(遵行)할 일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남북 진(津)의 9동(洞) 백성들이 울진 소장(訴狀)의 내용에,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려 할 때 삼척진영(三陟鎭營)의 사포와 월송만호(月松萬戶)가 3년 간격으로 행하는 것이 정식(定式)이고, 바람을 기다려 배를 출발하는 절차는 매번 구산진(邱山津)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월송진(月松鎭)은 본진(本津: 구산진)에서 서로 거리가 매우 가까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진영(鎭營: 三陟營將을 말함)이 행차할 경우에는 다 본진에서 유숙하였습니다. 유숙하는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바람의 형세가 좋고 나쁨에 달려 있으니, 그러한즉 8, 9일이나 십수 일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비록 유숙하는 날이 길지 않더라도 하루이틀 안에 각 항목의 비용 액수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적지 않은

비용을 저희 9동(洞)에게 담당시키는 것이 곧 저희 9동의 큰 폐해라 하겠습니까. 매번 돈을 걷을 때마다 원망과 증오가 더해져 모두들 '버티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여서 논의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상선(商船)은 어염(魚鹽)과 미역 등을 막론하고 배가 포구에 정박하여 나루터(津頭)에 내릴 때 세(費)를 받는 것은 8도(道)의 해안가 고을에서 통상 행하는 관례라고 합니다. 다만 남북 진(津)에 각 도(道)의 상선이 근년 진후로 많이 정박한다고 하니, 이 관례에 의하여 화물의 다소에 따라 세를 받아 이자를 취하여 '마땅히 써야 할 비용(雍正之費)'에 보충해서 쓴다면 저희 각 동(洞)을 영구히 보전할 대책으로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절목(節目)을 작성해 주어 적지 않은 민폐를 없애 주소서."라고 하였다.

대개 울릉도를 수도(搜討)할 때에 진영(鎭營)의 행차는 6년에 한 번 있었으나, 금년으로 말하자면 이를 동안 지출한 비용이 거의 100금(金)에 가깝다. 구산진(邱山津) 백성들이 호소하여 말하기를 "9동(洞)에 나누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전례(前例)이다."라고 하자, 다른 8동(洞)의 백성들이 호소하여 말하길 "징수하는 비용이 이처럼 많으니 우리도 견딜 수 없다."고 하며 서로 호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저렇게 처단하다 보면 피차간에 원망할 듯하지만, 단지 이들의 비용이 이처럼 많은데 만약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혹 심어 일을 유숙하게 된다면 장차 그 폐해를 어떻게 하겠는가. 진실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기에 일념으로 백성들의 삶을 지탱할 대책을 생각하건대, 모두 호소할 때 상대방의 형편을 서로 고려한다면 상인에게도 특별히 큰 손실이 없을 것이고 9동(洞)에도 폐해를 적잖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저 울릉도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수도관(搜討官)이 바람을 기다리는 것도 또한 구산진의 나루터이기에 그 비용을 종전에 9동(洞)에 나누어 징수한 것은 진실로 (그 동들이) 해변에 위치한 까닭이다. 그러한즉 상선이 왔다갔다할 때에 어찌 적은 세(費)를 받지 않겠는가. 하물며 다른 각 도(道)의 해안가 고을에도 같이 통용되는 관례가 있음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나하나 너희들이 호소한 대로 받는 세(費)의 수효와 거행 조건을 아울러 일일이 다

음[後]에 기록한다. 절목(節目)을 4건 만들어 하나는 작청(作廳)¹⁴에 비치하고, 하나는 휘라포(揮羅浦)에 내어 주고, 하나는 직고동(直古洞)에 내어 주며, 하나는 구산동(邱山洞)에 내어 줄 것이다. 이로써 영원토록 준행하며 혹시라도 이 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미(癸未)년 10월 모일.

관(官)【수결서명】

다음[後]

하나, 상선(商船)에 세(貫)를 받을 때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 안 된다. 소금은 한 섬(石)에 5푼(分)으로 하고, 명태는 한 마리(馬)에 1전(錢)씩이다.

하나, 이미 상선에 세를 받았으면 마땅히 해당 선주(船主)도 또한 세전(貫錢)이 없을 수 없다. 미역 채취선의 선주는 2냥(兩)으로 하고, 소금 선주는 5전으로 하며, 작은 고기잡이 선주는 5전씩이다.

하나, 절목이 이미 작성되었으면 그 거두어들이는 절차 같은 것은 어떤 진(津)을 막론하고 상선과 같은 식으로 한다. 혹 상선이 와서 정박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동임(洞任)¹⁵과 선주(船主)가 함께 그 상선이 정박한 사유를 관가에 가서 보고한다.

하나, 세를 받는 절차가 이미 정식(定式)이 되었으므로 거두어들이는 즈음에 서로 속이는 개탄스러운 일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맡아서 단속하는 감독관(句檢監官)이 없으면 안 된다. 감독관은 구산동에서부터 그 해당 동민 중에 다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관에 보고하고 차출하여, 그로 하여금 진(津) 별로 세를 받게 하되, 세를 받을 즈음에 각 해당 동임(洞任) 및 선주(船主)와 함께 거행한다.

14 작청(作廳) : 서리들의 집무처를 말한다. 공식적으로 인리청(人吏廳) 또는 이청(吏廳)이라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작청(作廳) 또는 성청(星廳)이라고 하였다.

15 동임(洞任) : 동네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하나, 상선이 이르러 정박한 뒤에 이미 해당 진(津)의 동임의 보고가 있으면, 관청에서 곧 제사(題辭)하고 세를 받는 감독관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돈은 그 다소를 헤아려 마땅히 해당 감독관이 구산동(邱山洞)에 와서 주고 해를 헤아려 이자를 취하게 한다.

하나, 이렇게 받은 돈을 이미 구산동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해마다 이자를 취하게 하겠으니, 진영(鎭營)과 월송(月松: 月松萬戶를 말함)을 막론하고 3년 간격으로 수토(搜討)하려고 바람을 기다릴 때에 지급해서 사용할 것을 아래에 기록한다. 구산동에서 모두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을 절대로 각 동에 침징(侵徵)¹⁶하지 말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이전처럼 분연히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하나, 어떤 진(津)을 막론하고 상선이 와서 정박한 후에 만약 숨기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폐단이 있어 이것이 염탐하여 발각되면, 해당 존위(尊位), 동임(洞任) 및 선주(船主) 등은 결단코 응당 죽도록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 상도(上道)의 진지(進支)¹⁷는 이미 관(官)에서 제공한 것이 있으면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그 부하와 말의 음식비 같은 것은 관청에서 차출한 능력 있는 색리(色吏) 한 사람과 구산동임(邱山洞任)이 함께 거행한다. 비용은 아래에 기록하니 하나하나 '신미 절목(辛未節目)'¹⁸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절대 부풀려서 지출하지 마라.

하나, 염선(鹽船)이 와서 정박할 때에는 한 섬에 5푼씩으로 이미 절목을 작성하여 거두어들일 것을 배정했으니 구산동에 주어서 수토관에게 보태어 쓰게 한다. 아래에 기록한 것은 염한(鹽漢)¹⁹에게 받는 세인데, 가히 거둬 징수한 것이라 할 만하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혁파하라.

16 침징(侵徵): 원래의 범위를 벗어나 징수하는 것.

17 상도(上道)의 진지(進支): 상도(上道)는 삼척영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삼척영장의 식사'라는 의미이다.

18 「신미절목(辛未節目)」: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앞에서 번역 소개한 신미년의 「원문」과 함께 만들어진 「절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9 염한(鹽漢): 소금 굽는 사람.

하나, 9동(洞)의 큰 폐해는 모두 구산동에 떠맡겨져 있기에 그들을 위해 바로잡게 한 것이니, 돈은 비록 세를 받을 곳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恩典)이 없어서는 안 되기에 자질구레한 민가의 부역은 제감(除減)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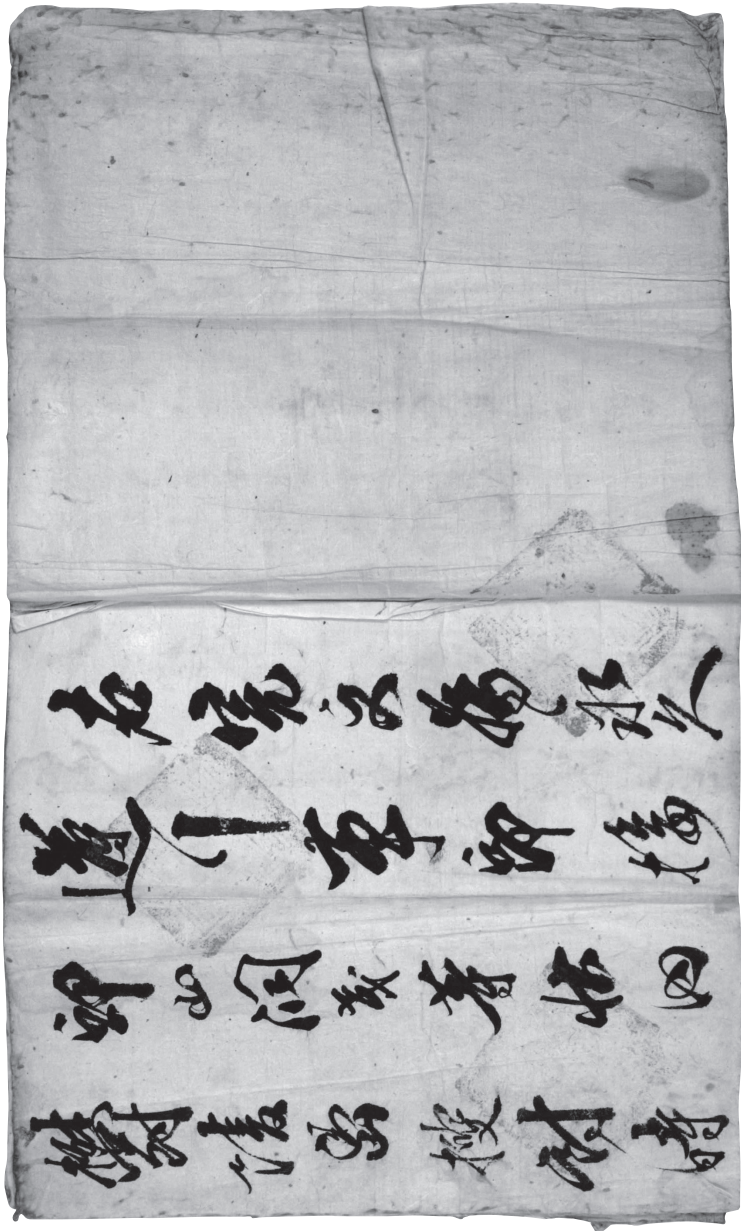
하나, 월송만호(月松萬戶)가 수토(搜討)할 때에 거행하는 절차 및 기타 여러 조항은 이미 「신미절목(辛未節目)」에 상세하니 지금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IV. 「완문」과 「수토절목」의 사진



* 심현용 박사 제공.



嶺營使道趙祖萬
 力行汎雜兼奉
 省卿劉所德海北
 河之評由隨護者
 而挽追久洞惟此
 壽省劉炳言蹟
 公一陳陳白出洞
 家諸名臺百武裕
 西搜討時第一添補
 三資是在身不授

老同存不取 刺冠后
二月作推心为有
宜在江以泰就诸
名崇列海久洞艘
社晴能文之林已物
洞意向右体壹截
裕丙有旗在老洞西
亦是尔者客儿作
牙卿作雁韵只九
洞良中右批右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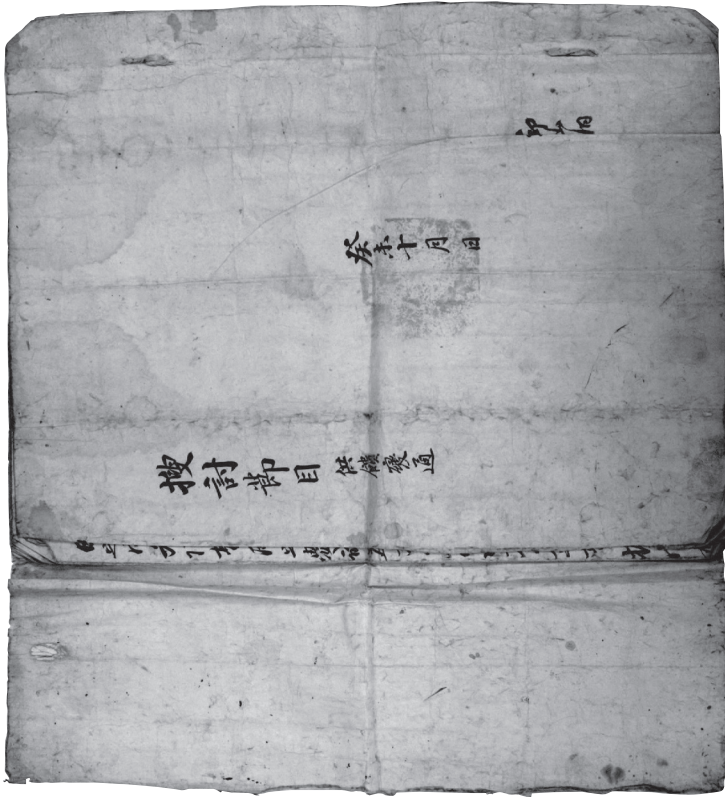
丙每四頭 在官處
 每二月 推搥搜討
 將用者 添補之意 既
 完 亦以 經 為 官 必 出
 遊 行 官 當 角

身 未 有 日

官

後

奉 山 洞 鋪 檢 任 西
 城 遊 洞 補 補 西



節目

右為永久遵行事即者南世洋九洞茂人等
呈狀內以為鬱陵島之搜討三陟鎮營使道與
月松萬戶間三年行之者乃是疾矣而待風驗
之節每於邱山津而為之是字而月松鎮之於本津
則相距稍近其所費用雖不全於數多也若德老
之行則本津踏位也為日之久近都閣於風觀之利不
利然則易至於八九日十數日矣雖踏位之久若二
日之內亦須費用之數誠為不少而以不少之費擴滿於

矣徒九洞者乃是九洞之巨款是如字庶於收錄之時
 悉悉相加成曰難互致齊會取識則屬和之毋論也
 其與若物到泊浦口下陸洋頭時漫首八道陸邊
 邑通行之例也而矣徒南此障長中各道商和之年
 以年來泊者亦云多矣依此例隨多少度察取陸能
 用於非正之款者似合於矣洞未保之道也以此立
 成條節目俾往不細之者以爲有聖蓋此鬱島控
 討時鎮營之行則六年一次而以今年言之兩日內女用之
 表殆迨百金者即小津民之計則曰令此九洞乃是高例
 其他八洞中之計則曰微敬此多矣可矣吾臣相呼作非
 止一再左支右對似不悉彼此難究之端是如字亦其
 兩日之費既少及艱然若若德風不利而或至於十餘
 日之留任則亦將奈何敬誠非細極之念思所以其保
 宗策是在此中齊外適至泰且事常則於商人別無大
 失於九洞省費不若大控鬱島在於海中控討在空待
 風亦在於洋頭如其費用之從前令陸於九洞者微由
 於險阻致則商和之去來也亦宜無生及是受質而況
 他邑道遠多邑通用之例于一依往來等而許受質數
 及及舉行條件並以這之後條條節目四件一則憲之
 任廳一則條條於揮揮一則條條於直右一則條條於部

山洞是孝子以此亦久遠行世或達載宜當者
 癸未十月日
 官
 後
 一商和之受賞也不可無一見之規去鹽則無名五分副太的無
 欺一奉外是齋
 一既已受賞於商和則當該和主人亦不無賞錢謹和主
 人則二兩奉和主人則五兩微魚和主人則五兩外是齋
 一今此節自已淑其收棒云花世俗於洋商和必奉未的
 是去等額同性與和主人眼同以於商和未的之意奉報
 官家是齋
 一受賞之節既已定錢則收棒之際相家之歡難保必
 無不可無句極之些在些在限自以同擇日法同年中
 稍實動聲者人報在差出使之通洋受賞而受黃
 之際與該同性及和主人眼同舉行是齋
 一商和到洞之後既有該洋同性之都則自作即為經送手
 受賞監管使一舉行而所捧錢段計其多少欠當該監管未
 付即山洞亦年取往是齋
 一今此受賞錢既付即出使之休并取往則無任感戴與

月松岡三年禮付行待風時支用下祀自卯山岡金高舉行
 而勿俟性於名同俾無小前給外之禁是齋
 〔世禱 某津高 紅未泊之後必有掩匿不報之禁是心可視
 發於廬標之下則當該尊位同往及取主人等影當限
 死嚴法是齋
 〔上道道支既有儀供則不名舉於而至於陪下人具之性儀
 則自官望出動幹色支一人與卯山岡性眼同舉行而而
 用下祀 一依年未管目用下為字矣勿此下是而
 〔聖水某泊也無名在外既已成吾目驗是故捧付自卯山
 岡補用於禮付及下祀則聖水之度實可謂是性自今
 為始永算是齋
 〔九洞巨塚都付卯山岡譯為橋林則錢雖有走噴字心
 不聽醜陽之典小一洞戶赴後除威是而
 〔月松萬石禮付之時舉行之節及其地諸條已悉於年
 末節目今不悉累床是齋
 〔末盡條件 遺波廣陳是而



글루쉬코프 교수의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 러시아 학자의 동해 표기 및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인연

2018년 2월 러시아 학자가 쓴 독도 관련 책이 러시아 현지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러시아 모스크바물리기술대학의 발레리 글루쉬코프(В.В.Глушков) 교수다. 책의 제목은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다. 이 책은 아직 국내에서 출판되지는 않았다.

고백하건데 나는 러시아어를 모른다. 그러기에 국내 출판을 기다렸다가 서평을 쓰거나,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에게서 평을 부탁하도록 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금은 무모하게, 또 성급하게 서평을 쓰게 된 데는 나름의 동기가 있다.

러시아 현지에서 독도에 관한 단행본이 출판되기는 이 책이 처음인 것 같다. 앞으로도 흔치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이 책의 출판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짧게 소개되었다! 그런데 언제 국내에서 출판될지는 기약이 없다.

국내 출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책의 내용이 이미 한글로 초벌 번역되었다. 물론 그 번역본을 읽어본 것으로서 서평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무모한 도전에 용기를 준 것이 있다. 글루쉬코프 교수의 책 집

1 『연합뉴스』, 2018. 2. 14(『러시아 영토문제 전문가, “독도는 한국 땅” 주장 저서 발간』).

필에 미력하나마 내가 도움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하드커버에 충천연색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조금 과장을 섞으면 페이지마다 컬러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그중 많은 사진의 출처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지난 2013년 7월 글루쉬코프 교수가 책을 쓰기 위해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였을 때 나는 그와 동행했다. 출처가 나의 이름으로 된 사진들은 그때 내가 찍어준 사진들이다.

그때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책 속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때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른다.

그때 내가 러시아인인 글루쉬코프 교수를 특별히 안내한 곳이 몇 곳 있다. 그중 한 곳이 울릉도 저동 마을이다. 그 마을 앞바다에는 1905년 러일 전쟁 중 침몰한 러시아 전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가 수장되어 있다. 러시아 해군 장교로 오랫동안 복무한 글루쉬코프 교수에게 그곳은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곳을 방문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찾아간 식당에서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식당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는 자칭해서 노래 한 곡을 불렀다. 물론 러시아 노래다. 노랫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비장한 곡조였다.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는 절대 일본인들에게 항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레베데프 선장의 명령에서 느낄 수 있는 비장함을 그의 노래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또 일본군 망루가 있었던 석포 전망대에도 갔다. 우리 일행에는 글루쉬코프 교수뿐만 아니라 러시아고등경제대학 학생들도 함께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입도할 수 있다는 독도다. 그런데 독도는 먼 길을 날아온 글루쉬코프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자격을 불문하고 입도를 허락하였다.

나는 그들을 독도 영토표식, 독도 조난어민위령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기념비 등 독도의 이곳저곳을 안내했다. 독도를 떠날 즈음 마침 동도 선착장으로 건너오신 독도 주민 김신열 님께 글루쉬코프 교수를 소개해드렸

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은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독도 방문 중 글루쉬코프 교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장면이 있다. 책을 보니, 그 순간에 찍은 두 장의 사진이 모두 나의 작품(?)이다. 글루쉬코프 교수는 자신을 제정 러시아 해군 수병들이 독도를 발견한 지 160년 만에 독도를 방문한 최초의 러시아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런 그가 독도에 발을 내딛는 그 영광의 순간에 나는 그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렸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글루쉬코프 교수가 독도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중에 러시아에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냐고? 나 독도에 있지.”라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냥 한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나갈 순간을 그는 사진과 이야기로 엮어 책 속에 담아두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서평’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참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짤막한 인사라도 남기고 싶었다.

2. 이해하기 쉬운 구성과 내용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라는 제목은 이 책이 ‘동해’, ‘울릉도’, ‘독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해준다. 이 책은 191쪽으로,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울에서의 만남, 2장 동해(일본해):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의 수역, 3장 울릉도: 역사와 지리 견학, 4장 꿈, 로맨스, 신비의 섬 울릉도, 5장 독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국의 섬, 6장 독도의 러시아인.”

위 목차를 보면, ‘동해’, ‘울릉도’, ‘독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글의 구성이 2013년 7월 글루쉬코프 교수가 서울에서 나와 러시아고등경제대학 학생들을 만난 후 동해 바다를 건

너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그가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한 한국인 친구로부터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그때로부터 10여 년간 그는 동해와 독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였다.

그는 그렇게 진행한 동해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연구 결과라는 구슬을 2013년 울릉도와 독도 여행이라는 실로 꿰었다. 자칫 개별적이고 다른 이야기로 흐를 수 있는 주제들을 여행이라는 한 줄에 꿰어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엮은 것이다.

그는 울릉도로 떠나기 위해 접한 동해 바다를 보면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울릉도에서 만난 주민들과 답사한 유적지를 소개 하면서, 울릉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전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행은 독도를 방문하며 최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렇게 만난 독도를 대하며 독도의 지리적 현황과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내었다.

이처럼 글을 기행문 형태로 구성한 것은 글루쉬코프 교수가 이 책을 가능한 한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택한 방식이었다. 동해 표기의 정당성이나 독도 영유권에 관해 증명하는 일은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다 보면, 책의 내용이 딱딱해지기 마련이다. 그는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행문 형태로 책의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그는 그의 연구 성과를 학문적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중에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개인적 감상도 적절하게 표시하였다. 또 그 여행 중에 찍은 사진도 가능한 한 많이 게재하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그의 의도된 작업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러시아 독자들에게 동해와 독도, 나아가 한국의 사회와 문화 및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글루쉬코프 교수는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서 최후를 맞은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의 행적과 그 선원들을 구해준 울릉도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행했던 역사 속에 자리했던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의 친밀한 관계도 은연중 말하고 있다.

3. 러시아인의 동해·독도 인식

러시아에서는 ‘동해’와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을까? 동해 지명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² 독도는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다.³ 반면 글루쉬코프 교수는 그 바다와 섬을 ‘동해(Восточном море)’와 ‘독도(Докдо)’로 표기하고 독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

글루쉬코프 교수는 지도와 사료를 통해 러시아에서 동해와 독도가 어떻게 표기, 인식되어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737년 페테르부르크 과학아카데미가 출판한 아시아 지도(‘젊은이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이익을 주기 위한 지도’)에 ‘한국해(Корейское море)’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했다. 그로부터 19세기 초까지 ‘한국해’라는 명칭이 러시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1904~1905년 러일전쟁 후 일본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일본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루쉬코프 교수는 “항해 또는 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를 ‘동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동해’라는 지명이 더 완벽하게 허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동해 바다가 러시아 극동 지역, 그것도 ‘동쪽을 지배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블라디보스토크에 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동해 지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국제수로기구(ИНО)와 UN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에 따라,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한편, 그는 러시아에서 독도에 대한 명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불렸는지도 소개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독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 ‘올리부차(Оливуца)’라고 했다. 이는 1854년 봄 러시아 구축함인 ‘올리부차호’(이전의 이름은 메넬라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붙인 이름이다. 1857년 러시아에서 출

2 『연합뉴스』, 2018, 10, 7(『교과서에 ‘일본해’ 단독표기한 OECD 국가 14개 달해』).

3 『서울신문』, 2008, 7, 23(박종호 「시론」 러시아의 독도 표기 유감』).

관된 '한반도 동해안 지도'에도 동도를 '메넬라이', 서도를 '올리부차'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한반도 동쪽 해안'을 그린 지도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는 의심할 바 없는 한반도에 부속된 한국의 섬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으나,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토와 섬 사이, 그리고 섬과 섬 사이에서 보이는 것이 옛날부터 국가 영토의 영유권을 결정하는 강력한 인자로 작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글루쉬코프 교수는 "고대 현자들은 지도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나침반이라고 주창했는데, 지도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균형추라고 했다."라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서양의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술하며, 이것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할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한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한일 간 독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1950년대 일본의 독도에 침략에 맞선 독도의용수비대 이야기에서부터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 주요한 독도 논쟁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이 독도를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영유해왔고,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한국 정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했다.

4. 소감

글루쉬코프 교수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를 10여 년간 연구하고 또 직접 독도를 답사하면서, 독도를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독도는 아름다운 한국의 섬이며,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말을 글루쉬코프 교수가 했다고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국인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하여 국내 기관 및 단체에서는 동해 표기 및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 입장 반영 사업으로 해외 전문가 초청이나 해외 현지 출판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글루쉬코프 교수가 정리한 그 한마디 말도 자신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이겠으나, 주변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도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첫째, 해외 전문가들에 대한 한국 측 입장 반영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성과가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위 한국 측 입장 반영 사업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글루쉬코프 교수가 독도에 대해 러시아어로 집필한 것처럼 해외 전문가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와 정서로 내용을 이해하고 저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동해 표기 및 독도 영유권에 관한 기본적인 다국어 정보나 자료를 새롭게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글루쉬코프 교수도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글을 쓰다 보니, 이전의 정보나 자료를 인용한 경우가 더러 있다. 향후 책을 다시 인쇄하거나, 한글로 번역 출판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수정 작업에는 한국 학자들의 직접적 자문이나 기본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해하기 쉬운 구성과 내용으로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동해 표

기 및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글루쉬코프 교수가 시도한 것처럼 딱딱한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고 또 이해를 돕는 사진 등 시각 자료를 많이 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튼 글루쉬코프 교수의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동해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특히 러시아어권에 확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토·해양 일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8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19일 : 한국군 정례 독도방어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일 : 일본 외무성, 한국 정부에 '독도 방어 훈련 중단' 항의 26일 : 일본 지자체 의회, 센카쿠제도 행정명칭에 '센카쿠' 포함 변경 요청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 : 정부,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강력 항의 17일 : 외교부,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철회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일 : 일본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 2019년부터 시행 공고 19일 :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도발에 중국·대만도 반발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일 : 한국 해양조사선 독도 주변 조사 9일 : 외교부 '독도 동영상' 4년 만에 1천만 뷰 돌파 13~14일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28일 : 외교부, '독도는 일본 영토' 일본 방위백서 철회 촉구 29일 : 국방부, 주한 중국방무관 불러 군용기 KADIZ 진입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일본, 러시아에 분쟁지 '쿠릴열도' 군사력 확대 자제 요구 3일 : 일본, 한국 해양조사선 독도 주변 조사에 항의 28일 : 일본, 해병대 '수륙기동단' 센카쿠 주변에 배치 28일 : 일본, 방위백서에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도발 30일 : 한국-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시 실시간 소통 핫라인 설치 합의

영토·해양 일지

2018년	국내	국외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 러시아, '쿠릴열도 승전 행사' 日 항의에 '과거 망각' 반박 7일 : 일본, 중국 해경선 4척, 센카쿠 인근 일본 영해 침입 항의 14일 : 러시아 '평화조약 제안'에, 일본 '쿠릴섬 먼저 해결' 주장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해군, 제주 관함식에 '육일기 게양 불가' 입장 22일 : 국회 교육위원, 독도 현장 시찰 22일 : 국회 교육위원, 독도지킴이 故 김성도 씨 추모식장 방문 헌화 29일 :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일본 반대로 세계기상기구 등록 실패 29일 : 외교부, 'KADIZ 침입' 중국대사관 관계자 초치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일 : '독도함' 사열 움직임에 일본 군함, 제주 관함식 '불참' 12일 : 일본, 한국 의원 독도 방문 계획 '수용 불가' 반발 22일 : 일본, 한국 의원 독도 방문에 '매우 유감' 항의 23일 : 중국 해경선, 센카쿠 일본 영해 이어 접속수역 항행 25일 : 중일평화조약 40주년, '센카쿠 분쟁' 6년 만에 화해 무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일 :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독도 주변 해역 조사 21일 : 외교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 즉각 폐지해야' 강력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 : 일본, 대륙붕 갈등 중국에 맞서 동중국해 EEZ 지질조사 16일 : 일본,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한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항의 20일 :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자원 공동 개발 합의 21일 : 일본, 사토 아키라(左藤章) 내각부 부대신과 일부 정치인 참석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 개최 21일 : 중국, 대만 지방선거 앞두고 동중국해 훈련 21일 : 중국, 남중국해 봄바이 암초에 군사용 탐지장치 설치

2018년	국내	국외
12월	• 11일 : 경북도, '2018 독도 국제포럼' 개최	

규정 및 규칙

나

- 편집위원회 규정
- 발행 및 심사 규칙
- 투고 요령
- 연구윤리규정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개정 2018.04.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칙]

제정 2011.06.30.

개정 2017.10.25.

제1장 발행규칙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장 심사규칙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 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수정 후 재심	A	B	C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두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 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당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2.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 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4.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5. 각주에서 현대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7. 서양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준),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 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 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제1조(목적)

1.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행위의 기준)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절적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게재”라 함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거나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이하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 『영토해양연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4조(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는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 표절에 대한 제재
 -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영토해양연구』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추후 발간되는 『영토해양연구』 부록에 공지한다.
-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영토해양연구』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추후 발간되는 『영토해양연구』 부록에 공지한다.
 -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제정 2007.09.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05.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12.23. 규칙 제105호
타규정개정 2017.12.27. 규칙 제180호
[시행 2018.9.3.] [규정 제92호, 2018.9.3., 타규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

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무총장, 실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 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

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9호, 2007. 0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호, 2010. 0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8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92호, 2018. 9. 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편집위원장

장세윤 _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편집위원

강봉룡 _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곽진오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병렬 _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오상학 _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상균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석용 _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환 _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이종원 _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정병준 _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교수

허영란 _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편집간사

양인호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영토해양연구 Vol. 16

초판 1쇄 인쇄 2018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